

공제보험 현황 조사

2020. 4

최창희·홍민지

머 리 말

공제조합은 사인들이 경제활동상 갖게 되는 유사한 리스크를 상호부조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사적조직이다. 공제조합의 유사보험(공제보험) 사업이 조합원이 아닌 경제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사업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공제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이고, 때로는 공제보험이 민간보험을 대체할 수 있어 공제보험과 보험회사 간에 경쟁 관계가 존재한다. 최근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공제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제조합들의 경우 보험회사와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현행 공제조합 관리 체계가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제조합 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 정부 기관이 다수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많은 공제조합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알려져 있을 뿐, 유사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목록 및 관련 개별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기초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현재 유사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 관련 현황을 조사하였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향후 우리나라의 공제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4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안 철 경

■ 목차

요약 / 1

I. 서론 / 2

1. 개요 / 2

2. 연구 배경 및 목적 / 6

3. 선행연구 / 8

4. 연구 범위 / 9

II. 공제 현황 / 10

1. 공제사업자 / 10

2. 관련 제도 / 26

3. 상품 / 38

4. 소결 / 51

III. 결론 / 53

| 참고문헌 | / 54

| 부록 | / 56

■ 표 차례

- 〈표 I-1〉 IAIS(2010)가 정의한 공제조합 조직의 특성 / 3
- 〈표 I-2〉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비교 / 4
- 〈표 II-1〉 공제사업자 목록 / 11
- 〈표 II-2〉 공제보험 상품 / 17
- 〈표 II-3〉 보험상품별 공제조합 개수 / 20
- 〈표 II-4〉 공제조합의 주무부처 및 개별법 / 20
- 〈표 II-5〉 개별법에 공제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공제 / 23
- 〈표 II-6〉 일부 공제조합의 재무상태 / 24
- 〈표 II-7〉 일부 공제조합의 손익 / 25
- 〈표 II-8〉 공제 관련 개별법 요약 / 28
- 〈표 II-9〉 일부 개별법의 정관 기재 내용 비교 / 31
- 〈표 II-10〉 『협동조합기본법』의 제2장 ‘협동조합’의 내용 / 34
- 〈표 II-11〉 교직원공제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 약관 비교 / 39
- 〈표 II-12〉 택시공제조합 약관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 비교 / 41
- 〈표 II-13〉 건설공제조합·손해보험회사 이행보증보험 약관 비교 / 42
- 〈표 II-14〉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적용 법규 및 규범 비교 / 46
- 〈표 II-15〉 보험회사의 민원 현황 공시 예 / 48
- 〈표 II-16〉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모집인 관련 제도 비교 / 50
- 〈표 II-17〉 공제 관련 현황 요약 / 51

■ 그림 차례

〈그림 II-1〉 공제의 구분 / 13

〈그림 II-2〉 보험회사의 공시 내용 / 47

〈그림 II-3〉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 48

Current Status and Issues Regarding MCCO Regulations

This report conducted a survey on the Korean MCCOs (mutuals, cooperatives and other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market and related regulations.

First, this report compiled a list of 94 MCCOs that provide quasi-insurance services by searching Supreme Court's Internet Registration Center. Currently these MCCOs are providing auto-insurance (7 MCCOs), non-line insurance (38 MCCOs), accident insurance (10 MCCOs), and pension (6 MCCOs).

Furthermore, this report verified that 78 MCCOs are established and managed based on 38 special laws, which are maintained by 17 government bodies.

When compared to insurance companies' contracts, most MCCOs contracts were similar to those of insurance company's. However some guarantee MCCOs' contracts had simpler (or lesser) clauses on insurance claims.

In addition, this report confirmed that MCCOs are operating under regulatory schemes that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insurance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have to operate abiding by a myriad of regulations and publish various facts regarding management, insurance operations and customer services (statics regarding complaints and lawsuits) whereas MCCOs have only to abide by their governing laws and have little (or no) responsibilities of divulging information regarding their insurance operations. See Table II-14 and figure II-2 for details.

요약

본 보고서는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본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제’, ‘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가 살아있는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중 각 공제조합의 홈페이지와 정관을 확인하여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94개 공제조합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들 중 한·미 FTA 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 일반공제를 제외한 94개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각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공제조합은 각각 자동차 7개, 손해 38개, 제3보험 10개, 연금 6개 등이었다(지역공제조합과 공제조합중앙회로 구성된 공제조합은 중앙회만 계산함).

본고는 각 조합의 정관조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2019년 현재 78개 공제조합이 17개 부처의 38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제보험 상품과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대부분 공제의 보험약관이 민간 보험회사의 약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일부 보증공제의 약관은 보험회사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본고는 공제조합과 보험회사들이 매우 다른 제도적 환경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및 다수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표 II-14 참고) 경영, 영업, 고객센터(민원 및 소송) 등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나(그림 II-2 참고) 법에 근거를 둔 공제조합들은 각 개별법인 근거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영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I. 서론

1. 개요

가. 공제의 정의

서로 돕는다는 의미인 ‘공제(共濟)’라는 용어는 통상 사인들이 『민법』, 개별 근거법(이하, ‘개별법’이라 함) 또는 『협동조합기본법』¹⁾ 등에 따라 유사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하는 공제조합(共濟組合)²⁾ 또는 공제조합이 구성원들에게 유사(類似)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사업(共濟事業) 등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³⁾ 일부 공제조합의 운영 규정이나 일부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에 ‘공제’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으나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제’의 정의가 언급되어 있는 몇몇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는 몇몇 공제조합의 정관이 ‘공제사업’을 ‘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일본공제협회⁴⁾는 공제사업을 ‘계약자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리스크⁵⁾에 대해 조합원이 미리 일정한 부금을 각출하여 공동의 재산을 준비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조합원에게

1)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 2017년 8월 9일 공포되었고, 기존에 설립된 공제조합들은 대부분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것이거나 법적 근거 없이 조합이 법원에 등기를 하여 설립된 것임

2) 또는 ‘공제회’라고 함

3) 『민법』 사단법인(제40조 이하), 조합(제703조 이하) 등임

4) 一般社団法人日本共済協会(<https://www.jcia.or.jp/>)

5) 사망, 입원, 주택피해, 교통사고 등임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보충해 서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IAIS(2010)는 공제조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MCCOs(mutuals, cooperatives and other community-based organizations)⁶⁾라고 정의하고, 그에 속하는 조직의 유형을 ① 어떤 특정한 법률이나 규제의 근거가 없는 조직, ② 보험 목적(insurance purposes)상 구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조직, ③ 『보험업법』에 근거를 둔 조직 등으로 구분했다.

〈표 I-1〉 IAIS(2010)가 정의한 공제조합 조직의 특성

특성	내용
회원 소유 (member ownership)	공제조합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급자 중 일부는 회원제를 통한 공제조합 조직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주식회사 조직의 주주가 갖는 것과 유사한 권한을 소유
민주주의 (democracy)	회원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회원들은 공제조합 조직의 총회를 구성하며, 이를 통하여 지배구조상 이사 선임과 같은 최종적 결정에 대해 민주적 권한을 행사
연대 (solidarity)	호혜적 결과가 그룹의 회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경우 많은 회원들이 호혜적 결과를 추구
한정된 집단과 목적에 기여 (created to serve a defined group and purpose)	회원들은 공통의 목표(goal), 목적(purpose), 또는 특성을 통해 조직에 가입
이익 또는 손실의 회원 귀속 (entitlement to profit)	회원에게 생기는 이익(또는 잉여) 또는 손실(적자). 손실의 경우에는 각 사법권의 관할구역(jurisdiction)별 규제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가능

자료: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p. 22

IAIS(2010)는 구체적으로 MCCOs에 속하는 조직으로 공제조합(mutuals), 상호급부조직(mutual benefit organizations), 협동조합(cooperatives),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 상조조합(burial societies), 친목조합(fraternal societies)⁷⁾, 지역기반조직(communitiy based organizations), 리스크공동관리조직(risk pooling organization), 자가보험제도(self-insuring schemes) 등을 열거했다.

6) 우리나라 공제조합들은 영문 표기에 cooperative, credit union, guarantee, mutuals, mutual-aid association, society 등을 사용함

7) 우애조합과 구분하기 위하여 '친목조합'이라 함

나.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표 I-2〉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비교

구분		보험회사	공제조합
법적 설립 근거		상법, 보험업법	상법, 민법, 개별법, 협동조합기본법
운영 조직	운영 목적	영리 추구	상호 협조를 통한 리스크 관리
	소유	주주	회원(조합원)
	기초재산	자본금	출자금
	최고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조합원 총회
	사업	보험, 부수업무	경제사업, 신용사업, 보험사업, 상호부조 등
보험계약 대상		일반 보험소비자	조합원(일반 보험소비자) ¹⁾
상품	관할 정부 부처	금융감독원	소관부처 또는 없음
	보험요율	모집수수료가 있어 상대적으로 높음	모집수수료가 없어 상대적으로 낮음
	약관	상대적으로 복잡함	다소 간소함
적용 규제	적용 법규의 수	다수 ²⁾	보험회사에 비해 적음 ³⁾
	재무건전성 규제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선진 기법 활용	배수운용, 준비금 규정과 같은 간단한 방법 이용
	주요감독 주체	금융감독자	소관 부처

주: 1) 현재 일반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유사보험을 판매하는 공제조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업법에 따른 재무건전성규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과 같은 보험 관련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예금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및 상법·민법임

3) 상법, 민법, 개별 근거법 등. 각 공제가 최대 1개의 개별 근거법에 영향을 받음

자료: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p. 27의 〈표 II-2〉의 보험회사와 공제조직 비교의 일부를 활용해 작성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제조합⁸⁾이 제공하는 유사보험은 보험과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도 공제조합의 유사보험이 보험업법의 상호보험과 유사하다고 밝힌 바 있다.⁹⁾ 다만 유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조합은 사업자 설립

8) 모든 공제조합이 유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나 본고에서 다루는 공제조합은 대부분의 경우 유사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임

9) 구체적으로 대판 1995. 3. 28. 94다47094는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이 육운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도 그 성질이 보험업법상 상호보험과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음; 한기정(2019), pp. 32~33

의 법적 근거, 운영조직, 보험 계약 집단, 상품, 적용 규제 등에서 보험회사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표 I-2〉 참조).

현행 보험업법이 허용하는 보험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이다.¹⁰⁾ 공제조합은 대부분 여러 개별법을 근거로 설립되거나 『민법』에 정의된 조합이 법원에 등기를 하여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공제조합은 운영 조직면에서도 보험회사와 다르다. 보험회사가 주주의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되는 반면,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비영리 조합으로 운영된다.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반면,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거나 회비를 납부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게 유사보험을 제공한다.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과거 일부 공제조합들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 보험소지자들을 상대로 유사보험을 제공하였다(통상 ‘일반공제’라 함). 그러나 현재 공제조합의 일반인에 대한 유사보험 제공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¹¹⁾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은 규제환경적인 면에서도 보험회사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다수의 법규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공제조합에 적용되는 규제의 수가 보험회사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¹²⁾ 이 부분은 II장의 보험회사와 공제의 제도 환경 비교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은 보험회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유사보험을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자가 제공하는 ‘보험’과 구분하기 위해 ‘공제유사보험’이라 부르는 것이다. 본고는 편의상 공제유사보험을 ‘공제보험’¹³⁾이라 부르기로 한다.

10)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11) II장을 참조하기 바람

12) 〈표 I-2〉의 주 2)를 참조함

13) 금융감독원도 공제유사보험을 담당하는 부서를 ‘공제보험팀’으로 명명하고 있어 공제유사보험을 ‘공제보험’이라 부르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임

2. 연구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공제보험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에는 경영 현황에 대한 불투명성, 미흡한 소비자 보호, 보험회사와 공정경쟁 문제, 다수의 기관에 의한 복잡한 규제 체계로 인한 불합리성 등이 있다.¹⁴⁾ 과거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함)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제조합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은 크게 일반공제사업¹⁵⁾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제안(2011년 전후),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제도 일원화 제안(2014년 전후),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동검사요구권¹⁶⁾ 신설 시도(2014년),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도입 등이 있었다.

먼저 한미·한EU FTA 체결 당시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상대방은 우리나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공제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일반공제들은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로 형태를 변경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II장 참조).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¹⁷⁾

성대규(2014)는 우리나라 공제사업 규제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금융위원회는 2014년 공제사업에 대해 공동검사 요구권을 『보험업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¹⁸⁾ 그러나 공제사업에 대한 규제의 일원화나 금융감독자의 공동검사요구권 등의 법제화는 공제조합과 여러 부처의 거센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14)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이준복(2011); 성대규·김경환(2015); 전우현·제철웅(2018) 등임

15)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을 상대로 공제보험을 판매하는 사업 형태임

16) 공제조합 검사 시, 금융당국이 공제조합 검사기관과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17)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p. 13; 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금융감독원·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2013)

18) 김경환·박정희(2014)

2017년에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동 법은 공제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고, 현재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 공제조합들이 동 법이 생기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동 법을 준용하고 있는 공제조합은 거의 없다(표 II-10) 『협동조합기본법』 참조).

이와 같이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지난 20여 년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FTA와 관련하여 추진된 일반공제의 보험업권 영입 이외에 다른 제도 개선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 법 도입 취지나 내용 면에서 동 법이 공제보험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역할을 하도록 도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제보험 관련 또 다른 문제는 공제보험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상세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부분 투명하게 일반에 공개된다. 반면 공제조합은 조합원 이외에게 경영 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공시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는 일부 공제조합의 경우에도 다수의 주무부처에 제출된 경영 현황이 취합되고 있지 않아 공제조합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개수, 시장 규모, 재무현황, 상품, 민원 및 소송 현황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기관이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해 공제조합의 설립을 승인하고 운영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제조합 관련 개별법의 목록과 그 내용이 최근에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제 관련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3. 선행연구

보험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제보험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 보호와 경쟁쟁 제고를 위해 주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공제보험의 중요성에 비해 공제보험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석호(2008)는 일반공제가 불공정경쟁, 건전경영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장치 미흡, 국제통상마찰 유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분리·운영되어야 하는 금융사업(신용사업, 생명공제, 손해공제 등)이 본체 내에서 구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재복(2008)은 국내 공제보험이 17개 정부 부처의 감독 다원화로 고비용·저효율, 전문적 규제·감독체계의 미흡 및 감독기관의 전문성 결여, 유사보험기관의 난립과 소비자 권익 상실 우려 및 소비자 보호 장치의 미흡, 보험규제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및 국제 통상마찰의 원인 제공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감독을 일원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제조합 관련 현황을 폭 넓게 조사한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는 일반공제를 보험과 비교하고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규제 일원화)을 제시했다.

이준복(2011)은 자동차공제¹⁹⁾ 관련 규제에 대해서 전문성 없는 관리로 인하여 재무구조 부실화 및 미흡한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형식적인 감독으로 공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자동차공제 관련 제도가 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병덕(2013)은 2013년 현재 60여 개 공제조합들이 여유 자산 부족, ALM을 고려하지 않은 자산운용, 과도한 위험투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19) 자동차(유사)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사업임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대규·김경환(2015)²⁰⁾은 우리나라의 공제 관련 규제 현황을 주요국(EU,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과 비교한 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1안: 보험업법 적용, 2안: 통일된 공제법 적용, 제3안: 개별 공제법을 유지하되 보험업법 간접 적용)을 제안하였다.

전우현·제철웅(2018)은 보증공제와 손해보험회사의 공제보험 감독체계 이원화의 문제점(공정경쟁 저해, 소비자 보호)을 지적하고 공제조합과 손해보험회사의 규제 및 감독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4. 연구 범위

본고는 II장에서 다양한 채널(대법원 등기 사이트, 인터넷 검색, 기존 연구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 공제보험 관련 현황(규모, 상품,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였다.

20) 성대규(2014)와 내용이 유사함

II. 공제 현황

1. 공제사업자

가. 목록

공제사업자와 관련한 정보 집적 체계의 부재로 현재 공제사업자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제조합은 설립자들이 민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법원에 사단법인으로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므로 법인 등기에 대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²¹⁾에서 공제조합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고는 현재 공제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조합을 최대한 모두 수집하기 위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제 연관어를²²⁾ 검색하여 관련된 단어가 법인명에 포함된 법인들 중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94개(학교 및 학원의 지역 조합을 제외할 경우 66개)²³⁾ 공제조합의 공제 목록을 <표 II-1>과 같이 작성하였다.²⁴⁾

<표 II-1>의 공제조합 목록은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의 공제조합 목록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제도 상당수 추가로 확인되었다.

21) <http://www.iros.go.kr/>

22) 예를 들어 공제, 조합 등임

23) 공제조합은 대부분 사단법인임

24)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공제'가 법인명에 들어 있는 경우가 549건, '조합'이 법인명에 들어있는 경우가 84,852건이었음

〈표 II-1〉 공제사업자 목록

구분	공제상품	공제운영조직
보 험 형 공 제	조합 공제	손해 (보증, 배상, 제3) 공제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구 건설감리공제조합),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건축사협회공제조합, 대한의사협회(의료사고배상책임공제), 상조보증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인천학원평생교육시설안전공제회, 자본재공제조합,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태권도공제조합,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역 조합: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학원안전공제회(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구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인중개사배상책임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의식가족공제회, 한국자원봉사공제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위탁사업), 한국콘텐츠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생명공제, 제3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정책성 공제	퇴직금, 복지급여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 과학기술인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교역자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행정공제회,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상호부조형 공제	사망·퇴직 및 복지 급여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관세사회, 담배인삼공제회, 세우회, 철도공제조합, 대한의사복지공제회, 교정공제회, 민주화운동공제회,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주: 사학연금의 경우 관리 기관이 공기업인 '공단'으로 되어 있어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음.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의 구분을 가급적 그대로 사용함. 2019년 9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기준임
 자료: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일부 참조함

추가로 확인된 공제조합 중 일부는 새로 생겨난 공제사업자이고 나머지는 법인명을 바꾼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⁵⁾ 일부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²⁶⁾ 공제사업을 중단한 공제조합²⁷⁾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 구분

공제조합은 보험 제공 여부, 보험계약자의 지위(일반인, 조합원),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의 종류, 공제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의 존재 여부, 공인²⁸⁾ 조합원 여부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II-1) 참조).

본 연구에서 조사된 공제 중 일부는 현재 조합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상호부조사업²⁹⁾만을 운영하고 있다.³⁰⁾ 공제들 중에는 보험사업과 상호부조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정 공제조합을 상호부조형 공제 또는 보험 공제로 이분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또한, 유사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의 경우 <그림 II-1>과 같이 보험계약자의 지위, 설립 근거인 개별법 존재 여부, 유사보험의 종류, 조합원이 공인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25)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으로 개명, 대한건축사협회공제조합 ⇒ 건축사공제조합으로 개명,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개명, 한국금속캔자원협회 ⇒ 한국금속포장산업협회로 개명,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으로 개명

26) 예를 들어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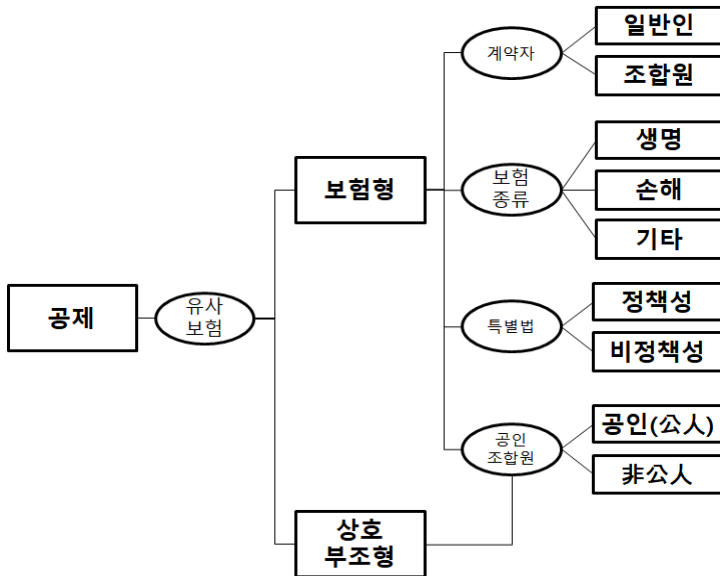
27)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전지재활용사업협회,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포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구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금속포장산업협회(구 한국금속캔자원협회) 등은 유사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일부 조합의 경우 조합은 존재하나 공제사업을 수행하지 않음

28) 본 보고서는 공무원, 준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자,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을 공인으로 봄

29) 경조사금의 지급 및 조합원 복지사업 등 공제보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의미함

30) 양우공제회(국정원 퇴직자),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KBS공제회, 한국언론인공제회 등은 순수하게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일부 공제들은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사업 내용 파악이 어려움

〈그림 II-1〉 공제의 구분



공제사업자가 보험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일반공제 또는 조합원공제로 구분될 수 있다.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공제조합은 생명, 손해, 기타 공제로 구분될 수 있고, 또는 공제조합을 제공하는 상품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도 가능한데, 현재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유사보험 종류에는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퇴직보험, 생명보험 및 기타보험(매출채권보험) 등이 있다.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정하고 있는 개별법 존재 여부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한 정책성공제와 그렇지 않은 비정책성공제로 구분될 수 있고, 공제조합원이 공인인지 여부에 따라 공인공제와 비공인공제로 구분될 수 있다.

1) 일반공제 사업자

〈표 II-1〉에서 일반공제로 속하는 유사보험 사업자에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보험 등이 있다.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미 FTA, 한·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는 일반공제에 대한 감독업무 중 일부를 금융당국에 이양하고 일반공제에 민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³¹⁾ 일반공제의 사업자의 형태 및 감독 관련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NH생명보험과 NH손해보험을 설립하고 각 보험회사에 기존의 공제사업을 이양하였다. 따라서 과거 농업협동조합이 영위하던 공제사업 부문은 현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로 전환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농협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과 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 ① 중앙회는 금융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농협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새마을금고법』은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새마을금고법』 제6조의 ② 참조). 감독과 관련하여서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가 '금고와 중앙회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하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31) p. 13 참조 바람

와 협의하여 감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근거법 개정을 통해 은행사업을 자회사 형태의 은행으로 분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설립)에 따라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제169조(감독)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수협은행을 감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³²⁾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개별법이 명시적으로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수산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³³⁾

수산업협동조합이 수협은행을 통하여 공제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데 반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조합이 대리점 역할을 하는 형태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일부 업무 부문을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따라 금융기관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협동조합법』은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규정을 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아야 한다.³⁴⁾

우체국보험은 관련 개별법³⁵⁾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32) 제16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 등·중앙회·수협은행 및 조합협의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수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업무 등) ② 수협은행이 제1항 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4장 모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34)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①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우체국보험 관련 개별법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당국과의 협업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부록 표 9〉 참조).³⁶⁾ 우체국보험의 경우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유사보험 사업으로 조합원 또는 일반인을 상대로 유사보험을 판매하는 공제와도 그 성격이 상이하다.³⁷⁾

이번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보험 등의 일반공제 사업자들은 공제사업 분리, 규제 관련 금융당국과의 협업,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통하여 한·미 FTA, 한·EU FTA 당시 제기되었던 공정경쟁 이슈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조합 형태로 유사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과 우체국보험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유사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일반공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금융당국으로 완전히 일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공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잘 알려져 있고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가 이미 상세히 연구한 바 있어 본고는 일반공제를 이외의 공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공제보험 상품

〈표 II-2〉는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공제조합들이 제공하고 있는 유사보험을 상품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는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에서 일반공제 사업자로 구분된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은 〈표 II-2〉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교직원공제(이하, '교직원공

3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36) 구체적으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한국은행법」 제28조 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 예외),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의 종류 수정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할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37) 개별법에 대한 분석 등에는 참고로 포함시켰음

제'라 함)의 경우 다양한 범위의 생명·손해 유사보험을 조합원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표 II-2>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된 59개 공제조합이 제공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는 크게 자동차보험(7개), 보증보험(22개), 배상책임보험(21개), 화재보험(9개), 재물보험(9개), 상해보험(10개), 퇴직연금(6개), 생명보험(1개) 등이고 중소기업중앙회(공제사업기금)의 경우 매출채권보험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표 II-2> 참조). 일부 공제조합(건설근로자공제회, 교정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행정공제회) 등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표 II-2>의 공제보험 중 생명보험에 속하는 보험은 생명보험과 퇴직연금,³⁸⁾ 손해보험에 속하는 보험은 자동차, 보증, 배상책임, 화재, 재물 등, 상해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제3보험이다.

<표 II-2> 공제보험 상품

공제조합	자동차	보증	배상	화재	재물	상해	퇴직 연금	생명	비고
건설공제조합		○	○	○	○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	○			○			
건축사공제조합		○	○						
경찰공제회							○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				
교정공제회									퇴직금
군인공제회							○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기독교대한성결교회교역자 공제회							○		
나라사랑공제회									퇴직금
담배인삼공제회							○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38) 손해보험회사나 은행 등이 취급하고 있으나 통상 생명보험으로 봄

〈표 II-2〉 계속

공제조합	자동차	보증	배상	화재	재물	상해	퇴직 연금	생명	비고
대한소방공제회							○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	○					
상조보증공제조합		○							
소방산업공제조합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	○		○			채무불이행 보증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			○			
자본재공제조합		○							
전국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전국건설자원공제조합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						
전국버스공제조합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								
전국택시공제조합	○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	○			○			
전문건설공제조합		○	○						
정보통신공제조합	○	○	○			○			노란우산공제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상호부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폐업 시 퇴직급여 보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보증공제)		○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공제)			○	○	○				근로자재해, 기업· 재산 종합, 단체PL
태권도공제조합			○						
학원안전공제회(13개)				○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							

〈표 II-2〉 계속

공제조합	자동차	보증	배상	화재	재물	상해	퇴직 연금	생명	비고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손해배상책임보증
한국교육안전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	사망·건강·질병· 상해 등 종합보험 제공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	○	○			
한국상조공제조합		○							
한국선주상호보험			○		○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	○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			
한국콘텐츠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해운조합			○						
행정공제회									퇴직금
개수	7	23	21	9	9	10	6	1	

〈표 II-3〉은 〈표 II-2〉의 보험상품을 크게 자동차, 생명, 손해, 제3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보험종목(대분류)을 제공하는 공제조합의 수를 파악한 것이다. 〈표 II-3〉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조합이 7개, 생명보험·퇴직연금 7개, 손해보험 38개, 제3보험 10개 등이었고, 두 가지 이상의 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조합도 다수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손해보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제조합이 2개였고, 자동차·제3보험 1개, 생명보험·퇴직연금과 제3보험을 제공하는 곳이 1개,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제공하는 곳이 8개 등이었다.

〈표 II-3〉 보험상품별 공제조합 개수

구분	자동차	생명·연금	손해	제3보험
자동차	7	-	2	1
생명·연금	-	7	-	1
손해	-	-	38	8
제3보험	-	-	-	10

3) 개별법에 근거한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³⁹⁾ 어떤 공제조합 관련 개별법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고는 〈표 II-1〉의 공제조합 정관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검색하여 공제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38개의 개별법을 확인하였다. 〈표 II-4〉는 이들 개별법과 개별법의 관리기관 및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공제조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4〉 공제조합의 주무부처 및 개별법

주무부처 (개별법 개수)	공제관련 개별법(공제조합 개수)	공제조합
경찰청	경찰공제회법	경찰공제회
고용 노동부(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업안정법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정거래 위원회(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과학기술정보 통신부(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제조합

39) 개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공제조합도 사단법인으로 법원에 등기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음

〈표 II-4〉 계속

주무부처 (개별법 개수)	공제관련 개별법(공제조합 개수)	공제조합
교육부(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8)	지역 학교안전 공제회(17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3)	지역 학원안전공제회(12개), 인천학원평생교육시설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
국방부	군인공제회법	군인공제회
국토교통부(7)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3)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축사법	건축사공제조합
	골재채취법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공인중개사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5)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3)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 조합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법	한국콘텐츠공제조합
법무부	교정공제회법	교정공제회
보건복지부(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표 II-4〉 계속

주무부처 (개별법 개수)	공제관련 개별법(공제조합 개수)	공제조합
산업통상자원부(3)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
	산업발전법(2)	자본재공제조합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소방청(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공제조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가족공제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보증공제, 파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 PL단체보험)
해양수산부(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한국선주상호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
	한국해운조합법	한국해운조합
행정안전부(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환경부(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²⁾
	폐기물관리법(3)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주: 1)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 부문을 금융회사로 분리·전환하였음(이후 참조를 위하여 포함시킴)

2)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지 않음

〈표 II-4〉에 조사된 바와 같이 2019년 현재 17개 부처가 38개 개별법을 관리하고 있고 이들 개별법에 근거하여 78개(지역 공제조합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50개)의 공제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다.⁴⁰⁾ 주무부처별 개별법의 개수는 국토교통부가 7개로 가장

40)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고려하지 않음. 학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원은 학원안전공제회와 인천학원평생교육시설안전공제회를 각각 계산하고 각 지역 조합을 모두 계산하지 않음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각각 3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방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가 각각 2개, 그리고 경찰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1개이다.

〈표 II-5〉는 공제조합의 개별법에 공제사업에 대한 구체적이 언급이 없는 공제조합 목록이다. 이를 공제조합의 경우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주무부처는 존재하나 관련 개별법이 공제보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공제조합들이다.

〈표 II-5〉 개별법에 공제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공제

주무부처	근거법규	공제운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공제조합
교육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한국자동차매매사업 조합연합회

4) 공인공제

현재 공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에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기도 사회복지지사), 경찰공제회(경찰), 교육시설재난공제회(학교 및 학력 인정 시설), 교정공제회(교정공무원), 군인공제회(군인), 대한소방공제회(소방공무원), 세우회(국세청 공무원), 양우회(국가정보원 직원), 전라남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공제회(전라남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 철도공제조합(철도공무원), 한국교육안전공제회(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 공무원, 연구기관 공무원), 한국방송공사공제회(한국방송공사 직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사회복지지사), 한국산업은행공제회(산업은행 직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자치단체), 행정공제회(행정공무원) 등이 있다.

다. 재무 현황

〈표 II-6〉 일부 공제조합의 재무상태

(단위: 억 원)

공제사업자	회계 연도	재무상태			보험사업 구분 ¹⁾
		자산	부채	자본	
한국교직원공제회	2018	346,099	91,578	254,521	○
행정공제회	2018	122,288	24,120	98,168	X
중소기업중앙회	2018	110,530	107,276	3,254	X
건설공제조합	2018	68,654	9,865	58,789	○
과학기술인공제회	2017	52,214	6,387	45,827	X
경찰공제회	2018	30,717	6,701	24,016	○
전기공사공제조합	2018	17,102	1,136	15,966	X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8	13,496	249	13,247	○
대한소방공제회	2018	8,959	1,832	7,127	X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18	7,940	598	7,342	○
정보통신공제조합	2018	5,184	373	4,811	○
전국버스조합	2018	4,294	3,704	590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018	3,775	224	3,551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2018	2,302	2,018	283	X
소방산업공제조합	2018	1,661	188	1,474	○
공인중개사협회	2018	514	419	94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	2018	405	65	340	X
어린이집공제조합	2018	392	256	136	○
건설근로자공제회	2017	288	30	258	X
한국콘텐츠공제조합	2018	158	8	150	○
합계	-	796,972	257,027	539,944	-

주: 1) 보험사업 관련 내용을 별도로 공시하는지 여부, 자산 순으로 정렬됨. 과학기술인공제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2017년 자료임

2) 공제별로 회계 기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와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각 공제의 공시자료(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만 조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제외한 98개 공제조합 중, 재무 현황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있는 공제조합은 약 20개이다.⁴¹⁾

41)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공인중개사협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어린이집공제조합,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버스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콘텐츠공제조합, 행정공제회 등. 동 목록은 인터넷 등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재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함. 중소기업중앙회 재무 현황이 노란우산공제를 포함시키고 있어 노란우산공제는 포함시키지 않음

〈표 II-7〉 일부 공제조합의 손익

(단위: 억 원)

공제사업자명	회계 연도	손익										순이익
		수입				지출 ¹⁾						
		사업수입	투자수입	기타	소계	보험금	사업비	기타	소계			
한국교직원공제회	2018	21,735	-	805	22,540	-	7,432	806	8,238	14,302		
행정공제회	2018	10,741	-	4	10,745	-	4,101	3,936	8,037	2,708		
건설공제조합	2018	2,897	715	1,261	4,873	202	2,410	126	2,737	2,136		
중소기업중앙회	2018	3,604	-	824	4,428	-	2,745	1,683	4,428	0		
전국렌터카공제조합	2018	3,968	-	18	3,986	-	381	3,629	4,009	-23		
과학기술인공제회	2017	-	3,154	63	3,216	-	1,998	88	2,086	1,13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8	1,300	32	1,119	2,452	-	1,138	567	1,706	746		
전국버스조합	2018	2,251	-	10	2,261	1,674	656	0	2,331	-70		
경찰공제회	2018	-	1,474	604	2,078	0	1,032	4	1,036	1,042		
전기공사공제조합	2018	462	-	201	663	-	375	12	387	276		
대한소방공제회	2018	-	-	394	394	-	-	38	38	356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	2018	352	-	6	358	-	346	20	366	-8		
건설근로자공제회	2017	284	-	4	288	-	233	0	233	55		
정보통신공제조합	2018	69	34	172	275	-	129	13	142	133		
공인중개사협회	2018	179	4	39	221	-	204	1	205	16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18	189	27	0	216	7	15	227	249	-33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018	74	55	52	181	-	95	5	100	82		
어린이집공제조합	2018	141	11	1	153	-	133	12	145	7		
소방산업공제조합	2018	25	6	94	126	5	15	37	57	69		
한국콘텐츠공제조합	2018	6	2	0	8	-	13	0	13	-5		
합계	-	48,277	5,514	5,671	62,708	1,888	25,722	11,763	39,373	23,335		

주: 1) 법인세 비용 제외. 수입 순으로 정렬함. 과학기술인공제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2017년 자료임

2) 공제별로 회계 기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와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재무 현황을 공시하는 공제조합의 총 자산은 약 79조 6,972억 원, 부채는 25조 7,027억 원, 자본은 53조 9,944억 원 수준이었다(〈표 II-6〉 참조). 조사된 공제조합 중 자산이 가장 많은 공제조합은 교직원공제⁴²⁾로 자산 규모가 34조 6천억 원 수준이었고 행정공제회(12조 2천억 원), 중소기업중앙회(11조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된 공제들의 총 수입은 6조 2,708억 원, 지출은 3조 9,373억 원, 순이익은 2조 3,335억 원 수준이었다(〈표 II-7〉 참조). 수입이 가장 많은 공제조합은 교직원공제로 2018년도에 2조 2,540억 원의 수입을 올렸고, 8,238억 원을 지출해 1조 4,30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다.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공제조합들은 행정공제회(1조 745억 원), 건설공제조합(4,873억 원), 중소기업중앙회(4,428억 원) 등이었다.

2. 관련 제도

가. 국내 제도

1) 개요

공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규에는 『민법』, 『상법』, 다수의 개별법(〈표 II-4〉 참조),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있다. 먼저 『민법』 제3편 제2장 제13절의 조합에 관한 부분(제703조 ~ 제724조)은 조합의 의의, 재산, 금전출자, 사무집행, 준용규정, 손익의 배분,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 청산 등 조합의 결성, 운영, 청산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다수의 공제조합들은 정관 또는 개별법에⁴³⁾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을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 기본법』은 제59조(지분의 양도)와 제68조(다른 법률

42)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그 영향으로 자산 및 수입이 큰 것으로 보임

43) 공제조합의 정관이나 규정에 공제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음

의 준용)⁴⁴⁾ 등에서 개별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상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민법』과 『상법』의 내용은 보고서에 별도로 소개하지 않는다.

2) 개별법

〈표 II-8〉은 〈표 II-4〉에 있는 42개 개별법 중 과거 일반공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개별법(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을 제외한 38개 개별법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⁴⁵⁾

현재 공제조합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별법들은 대부분 공제조합의 설립 방법,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정관, 공제조합의 운영(지배구조, 이사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공제 임원의 선출), 공제보험 사업의 운영(약관, 요율, 리스크 관리), 감독(감독 주체 및 감독주체의 권한), 회계에 관한 사항(예산 및 결산 방법, 공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들이 정하고 있는 세부 내용은 개별법별로 천차만별인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45) 연구의 완전성을 위하여 일반공제 관련 개별법에 대한 내용도 조사하였으나 본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음(〈부록 표 4〉~〈부록 표 10〉 참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자동차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살펴보았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표에 포함시키지 않음. 상세한 내용은 개별법 및 〈부록 표 1〉, 〈부록 표 4〉~〈부록 표 10〉을 참조하길 바람

〈표 II-8〉 공제 관련 개별법 요약

법	세립 ³⁾	사업 ⁴⁾	정관 ⁵⁾	지배 구조 ⁶⁾	임원 임명 ⁷⁾	정부 출연 ⁸⁾	예산 ⁹⁾	주무 감독 ¹⁰⁾	금융 감독 ¹¹⁾	공시 의무 ¹²⁾	보험금 지급 ¹³⁾	재무 건전성 규제 ¹⁴⁾	보통 조영 ¹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	○	○	○	○		○	○				준	
건설기술진흥법	1	○	○	○				○	○				
건설산업기본법	1	○	○	○	○			○			×	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	○					○			×		
건축사법	1	○	○					○					
경찰공제회법	2	○	○	○	○	○	○			○		준	
골재채취법	1	○	○					○	△협의				
공인중개사법	1	×	×		○			○	△	○		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2	○	○	○	○	○	○	○		○		준	
교정공제회법	2	○	○		○	○	○	○				준	
군인공제회법	2	○	○	○	○	○	○	○		○		준	
대한소방공제회법	2	○	○	○	○	○	○			○		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2	○	○	○	○	○	○			○		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	○	○				○					
사회복지사업 ¹⁾	1	○	○	○	○	○	○	○				준	
산업발전법	1	○	○	○		○						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1	○	○	○				△일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	○	○		○	○	○				준	

〈표 II-8〉 계속

법	설립 ³⁾	사업 ⁴⁾	정관 ⁵⁾	지배 구조 ⁶⁾	임원 임명 ⁷⁾	정부 출연 ⁸⁾	예산 ⁹⁾	주무 감독 ¹⁰⁾	금융 감독 ¹¹⁾	공시 의무 ¹²⁾	보험비 부담 ¹³⁾	재무 건전성 규제 ¹⁴⁾	부쟁 조정 ¹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	○	○			○		△보고권				준	
식품위생법	1	○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	○	○	○			○				재	○
영유아보육법	1	×	○					○					
의료분쟁조정법 ²⁾	1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2	○	○	○	○			○				준	
정보통신공사사업법	1	○	×					△보고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	×	○	○	○			○				준	
직업안정법	1	×	○										
콘텐츠산업 진흥법	1	○	○			○		○		○		준	
폐기물관리법	2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	○	○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	×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	○	○	○	○	○	○					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2	○	○	○	○	○	○			○		준	

〈표 II-8〉 계속

법	설립 ³⁾	사업 ⁴⁾	정관 ⁵⁾	지배 구조 ⁶⁾	임원 임명 ⁷⁾	정부 출연 ⁸⁾	예산 ⁹⁾	주무 감독 ¹⁰⁾	금융 감독 ¹¹⁾	공시 의무 ¹²⁾	보험법 적용 ¹³⁾	재무 건전성 규제 ¹⁴⁾	분쟁 조정 ¹⁵⁾
한국해운조합법	1	×	○	○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	○	○				○				재	○

주: 1) 사회복지사업 등의 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 주무부처 인가(허가)(1), 설립 기능(2), 4) 사업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는지 여부, 5) 정관에 기재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6)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는지 여부, 7) 공무원의 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또는 주무부처가 임원 선출에 관여하는지 여부, 8) 정부 출연 가능 여부, 9) 주무부처의 예산 사전 승인 여부, 10) 주무부처의 감독 권한(조사, 검사, 시정명령, 직원해임요구 등) 여부, 11)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 12) 공시의무, 13) 보험업법 적용 배제 여부, 14) 재무건전성관련 규제(준: 준비금, 재: 재무건전성), 15) 주무부처의 분쟁조정위원회 존재 여부

38개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설립 방법은 크게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인들이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주무부처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방법과 인허가 없이 단순히 조합을 법인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이 있다.

다수의 개별법들이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일부 개별법(공인중개사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분쟁조정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직업안정법, 한국해운조합법)은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표 II-9〉 일부 개별법의 정관 기재 내용 비교

개별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7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고정공제회법 제4조(정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조
구분	정관 기재사항	정관 각 호의 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
기본 내용	1. 목적	1. 목적	1. 목적
	2. 명칭	2. 명칭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4. 사업의 내용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회원관련	5.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6.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 및 기관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자산 및 회계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과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	-	10.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정관의 변경	10. 정관의 변경절차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 〈부록 표 4〉 요약

38개 개별법 중 대부분은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정관⁴⁶⁾ 작성 후 이를 설립 신청 시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38개 개별법은 대부분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개별법 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정하고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식품위생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폐기물관리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은 정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표 II-9〉는 건설산업기본법, 교정공제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관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3개 개별법들은 공제조합이 공제조합과 관련한 기본 내용(설립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 또는 업무, 회원의 자격과 탈퇴, 조직, 임원 및 직원, 회계, 자산 관리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표 II-9〉 참조). 일부 개별법들은 〈표 II-9〉에 보험료, 위험관리, 출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38개 개별법들은 지배구조, 임원의 임명, 정부출연, 회계 및 예산·결산, 주무부처의 감독, 공시의무, 보험업법의 적용 여부, 재무건전성 규제, 분쟁조정 조직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공제회를 운영하는 ‘이사회’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축사법』은 공제조합의 운영 주체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않다.

공제사업 관련 개별법들은 임원의 선출 임명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법』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에 따르면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도 이사장과 이사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에서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법이 임원의 선출 과정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

46)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조합의 규칙임

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경찰공제회법』, 『골재채취법』 등도 임원의 선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일부 개별법들은 예산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사회복지사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공제조합의 경우 예산에 대해 특별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38개 개별법은 주무부처의 감독에 대해서도 상이하게 내용을 정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개별법이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독권한(감독권, 조사권, 보고 명령권, 불이행 시 업무정지 및 임직원 해임 등)을 정하고 있다.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산업발전법』, 『의료분쟁조정법』, 『직업안정법』, 『폐기물관리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등은 감독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개별법들은 대부분 주무부처의 감독권한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주무부처가 특정 공제조합의 감독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운영의 건전성이 다른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공제회법』은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는 대신 공제회가 외부 감사를 받고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참조).

일부 개별법들은 주무부처의 감독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 주무부처가 공제조합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공제조합의 감독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골재채취법』, 『공인중개사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등은 공제조합의 감사에 있어 금융감독자와의 협업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개별법들은 공제조합의 감사에 있어 금융감독자의 권한 및 주무부처와의 협업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개별법에 근거한 공제조합의 유사보험은 통상 보험업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법들은 공제조합의 사업이 보험업법의 적용 예외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은 공제조합의 공제보험 사업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38개 개별법은 보험리스크의 관리에 대해서도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표 II-9>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17개 개별법은 공제조합이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험리스크에 준하는 준비금을 적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개별법들은 자본, 자산, 유동성 등을 고려한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공제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개별법들은 보험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다른 개별법들은 그렇지 않다.

3)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은 <표 II-10>과 같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 제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표 II-10> 『협동조합기본법』의 제2장 ‘협동조합’의 내용

절	조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제16조(정관)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21조(가입)
	제22조(출자 및 책임)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5조(제명)

〈표 II-10〉 계속

절	조
제3절 기관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제31조(대의원총회)
	제32조(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4조(임원)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제36조(임원 등의 결격 사유)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0조(임원의 해임)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42조(감사의 직무)
	제43조(감사의 대표권)
	제44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제46조(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
	제49조(운영의 공개)
	제49조의2(경영공시)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1조(손실금의보전과 잉여금의배당)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제55조(출자지분취득금지 등)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제57조(해산)
	제58조(청산인)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제60조(『민법』등의 준용)
제6절의2 조직변경	-
제7절 등기	-

공제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법 제80조의2(공제사업),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시행규칙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⁴⁷⁾ 등에 기술되어 있다(아래 참조).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의2(공제사업)

-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80조의2(공제사업)에 기술된 바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들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회계 부분은 공제사업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에산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 제49조(운영의 공개)는 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적극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9조의2(경영공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협동조합에 대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는 유사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합이 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11조(감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⁴⁸⁾을 감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47) 공제사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임

48) 제2조(정의)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지칭함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품

가. 개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인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는 보험 약관(계약서), 요율 및 준비금 산출서, 사업방법서 등이 있다. 사업방법서의 경우 보험상품별로 큰 차이가 없고 준비금은 요율 및 보험의 과거 손해 패턴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출되므로 보험상품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는 보험 약관과 요율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절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약관과 요율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비용)를 비교한다.

나. 약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공제조합들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제3보험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이 중 교직원공제의 종신보험(건강 및 사망 담보), 택시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보험 등을 보험회사의 약관과 비교하였다.

먼저 <표 II-11>는 교직원공제와 생명보험회사의 약관을 비교한 것이다. 교직원공제의 약관은 생명보험회사 약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생명보험회사 약관의 경우 예금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보증(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가 파산할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교직원공제의 경우 이 조항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동 조항이 약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⁴⁹⁾ 보험회사의 약관에 교직원공제에 없는 조항이 몇몇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교직원공제가 사업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여 간소화한 것으로 교직원공제와 생명보험회사의 약관 자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를 참조함

〈표 II-11〉 교직원공제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 약관 비교

항목	교직원공제('16. 10)	생명보험회사
정의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2조의2 용어의 정의2
보험금	제2관 급여금의 지급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급여금의 지급 사유)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4조(급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5조(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급여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지)	제6조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통지
	제7조(급여금의 청구)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제8조(급여금의 지급 절차)	제8조 보험금의 지급 절차
	-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9조(주소변경통지)	제10조 주소변경통지
	제10조(수익자의 지정)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1조(대표자의 지정)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고지의무	제3관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성립	제4관 급여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급여 계약의 성립)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16조(가입 신청의 철회)	제17조 청약의 철회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18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18조(계약의 무효)	제19조 계약의 무효
	제19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0조(급여 나이 등)	제21조 보험나이
	제21조(계약의 소멸)	제22조 계약의 소멸
보험료	제5관 부담금의 납입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부담금 및 본회의 보장 개시)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제23조(제2회 이후 부담금의 납입)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24조(부담금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표 II-11〉 계속

항목	교직원공제(‘16. 10)	생명보험회사
	제25조(부담금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계약해지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6조(가입자의 임의 해지 및 피급여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29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27조(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제30조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제28조(본회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29조(해지환급금)	제32조 해지환급금
	-	제32조의2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32조의3 적립액의 인출
	-	제33조 보험계약대출
	제30조(배당금의 지급)	제34조 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1조(분쟁의 조정)	제35조 분쟁의 조정
	제32조(관할법원)	제36조 관할법원
	제33조(소멸시효)	제37조 소멸시효
	제34조(약관의 해석)	제38조 약관의 해석
	제35조(본회가 제작한 급여 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6조(본회의손해배상책임)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7조(개인정보보호)	제41조 개인정보보호
	제38조(준거법)	제42조 준거법
	-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제8관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전환제도
	-	제44조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신청 및 중지
	-	제44조의2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표 II-12〉 택시공제조합 약관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 비교

항목	택시공제조합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
계약대상	1	-
보험 구성	2	2
보험료 계산	6	2④
보상하는 손해	2③	3,6,12,17,21
보상하지 않는 손해	10	5,8,14,19,23
피보험자	-	4,7,13,18,22
조합원의 범위	9②	-
지급보험금	9①	10,16,20,24
보험금 청구	11①1	25
보험금 청구절차	11①2	26,27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11②	29~32
가지급금	11③	28
보험금 분담	15①	33
대위권	15②	34
보험회사의 불성실로 인한 배상책임	-	35
합의 등 대행	8②	36
공탁금 대출	8③	37
계약의 성립	3	38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16	39
보험 안내장의 효력	17	40
청약 철회	-	41
보험기간	4	42
계약 전 고지의무	5①	44
계약 후 고지의무	5②	45
사고발생 시 의무	5③	46
계약 내용 변경	5②	47
피보험 자동차 양도	14①	48
피보험 자동차 교체	14②	49
보험계약 취소	16②	50
보험계약 효력상실	13①	51
보험계약의 해지 및 해제	13①	52,53
보험료 환급	6②,③,13②	54
조사	21②	57
분쟁 조정	8①	60
관할법원	8④	61
보험료 분할 납입	19	-

〈표 II-12〉는 개인택시공제조합 자동차보험 약관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비교한 것이다. 두 약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개인택시공제조합 약관의 경우 계약 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부분이나 실제로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⁵⁰⁾ 약관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배상책임보험 약관과 보험회사의 약관 비교에서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부록 표 12) 참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배상책임보험 약관이 손해보험회사의 약관과 유사한 이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과거 보유공제⁵¹⁾로 전환하기 이전 보험회사에 보험리스크를 전가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아직까지 약관을 크게 수정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와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13〉 건설공제조합·손해보험회사 이행보증보험 약관 비교

항목	보험자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보상하는 손해	제1조(보증 책임) 사업 불이행 채무 보상	제1조(보상하는 손해) 채무 불이행 보상	1	1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조(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	2
보상 한도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제6조(보험금지금액)	3	6
계약의 성립	-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 성립 조건	-	14
보장 개시	-	제16조(회사의 보장 개시)	-	16
채권자의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	제4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 의무)	제4조(손해의 방지와 경감 의무)	4	4
주계약 해지의무	제5조(주계약의 해지)	제19조(주계약의 해지)	5	19
청약의 철회	-	제17조(청약의 철회)	-	17
계약의 내용 변경	-	제18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	18

50) 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https://www.kodt.or.kr/guide/guide_02.jsp)

51) 보험리스크를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에 전가(출재)하지 않고 직접 보험리스크를 인수·관리하는 공제조합임

〈표 II-13〉 계속

항목	보험자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보증서의 효력상실	제6조(보증서의 효력상실)	-	6	-
조사권	제9조(사업 이행 상황 및 보증채무의 확인 조사)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9	3
담보 처분	-	제9조(담보의 처분)	-	9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제8조(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제5조(보험금의 청구)	8	5①,②
통지의무	제7조(보증 채권자의 통지 의무)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7	10,11
보험금 지급시기	제10조(보증금 지급시기) 지체 없이 지급 보험금 결정. 7일 내에 지급	제5조 지체 없이 지급 보험금 결정. 7일 내에 지급	10	5②
가지급 보험금	-	제5조(가지급 보험금)	-	5③,④, ⑤,⑥
대위 및 구상권	제11조(대위 및 구상)	-	11	7
보증권리양도	제12조(양도 및 질권 설정 금지)	제12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 방법	12	12
사기에 의한 계약	-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 취소 가능	-	13
보험사고의 발생	-	제20조(보험사고의 발생)	-	20
계약의 무효	-	제21조(계약의 무효)	-	21
계약의 해지	-	제22조(계약의 해지)	-	22
보험료의 환급	-	제23조(보험료의 환급)	-	23
분쟁조정	-	제24조(분쟁의 조정)	-	24
관할법원	제13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제25조(관할법원)	13	25
소멸시효	-	제2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	-	26
약관의 해석	-	제27조(약관의 해석)	-	27
보험안내장의 효력	-	제2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 안내장의 효력)	-	28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	제15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	15
변제 등 충당 순서	-	제8조(변제 등의 충당 순서)	-	8

〈표 II-13〉 계속

항목	보험자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29
개인정보의 보호	-	제30조(개인정보의 보호)	-	30
예금자보호제도	-	제32조(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되지 않음	-	31

건설공제조합과 보증보험회사의 약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II-13〉 참조). 구체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보험회사의 약관에 있는 조항 중 ‘계약의 성립, 보장 개시, 청약의 철회, 계약의 내용 변경, 담보 처분, 가지급 보험금, 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사고의 발생, 계약의 무효, 계약의 해지, 보험료의 환급, 분쟁조정, 소멸시효, 약관의 해석, 보험안내장의 효력,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변제 등 충당순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의 보호, 예금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보험회사의 경우 가지급 보험금⁵²⁾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 등을 약관에 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보험 약관은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비교

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보험료 이외에 조합비(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비와 주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회비 등)를 공제조합에 지불하고 적립된 조합비와 조합비를 투자하여 얻은 수익 등이 공제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일부분 사용하고 수익이 많이 남은 경우 순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기도 한다.⁵³⁾

52) 보험금액 결정 이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임

53) KBS(2019. 3. 20), “건설공제조합 작년 1,584억 원 당기순익…830억 원 배당”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주들이 투자하고 회사는 주주들의 투자금과 보험료를 운용하여 운용 수익을 올리고 보험금 지급 및 비용 지출 후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과 보험회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보험요율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공제조합은 적립된 조합비와 자산을 투자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데 반영되므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⁵⁴⁾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도 보험소비자에게 낮은 요율을 제시하기 위해 자산운용수익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기도 한다.

또한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 소비자 그룹이 다를 수 있다. 일부 공제조합의 경우 우량 회원사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편차가 큰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우량 회원사의 경우 대부분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은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회사에 우량하지 않은 수 요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다.⁵⁵⁾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보험사업 운영 방법 및 제도 환경 차이로 인해 부가보험료(사업비)가 달라지는 부분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보험료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중 하나는 모집 수수료가 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모집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보험모집인 판매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모집수수료가 대부분의 공제조합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4) 통상 보험요율은 순보험료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순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험료로 받는 부분이고 사업비는 보험자가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용 부분임

55)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수수료율은 건설회사 신용도에 따라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음; 브릿지경제(2017), “신의 직장 ‘건설공제조합’은 어떻게 돈을 버나”

〈표 II-14〉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적용 법규 및 규범 비교

구분	보험회사	공제
적용 법규	• 보험업법 • 보험업감독규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각종 회계기준(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¹⁾ • 재무건전성규제(RBC, K-ICS) •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ORSA)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 공정거래법 • 각종 금융행정지도²⁾	• 개별 근거법 •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주: 1) 한국회계기준원을 참조하기 바람

2) 금융감독원을 참조하기 바람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규제차이에 따른 사업비용 부분이다. 먼저 보험회사는 영업의 각 부문에서 보험업법(시행령, 시행세칙 포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은 보험업의 허가, 보험회사(조직, 설립, 사원, 청산), 보험모집(종사자 자격, 대리점의 운영, 수수료), 설명 의무, 자산운용, 계산(재무제표의 제출, 준비금, 배당금 등), 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시, 요율산출의 원칙(보험업감독규정),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3자 보호, 감독 등 보험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걸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 이들을 준수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해야 한다(〈표 II-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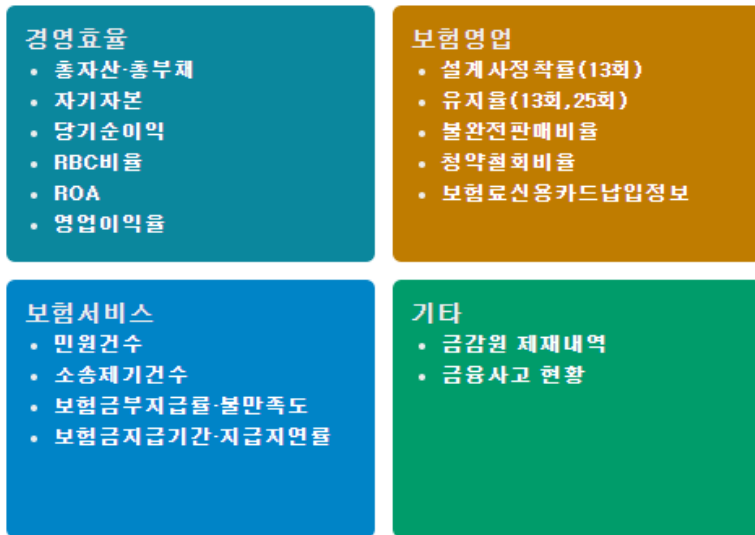
이에 반해 공제조합의 경우 개별법이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와 같이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3가지 회계 기준(기업회계, 감독회계, 관리회계)에 따라 3가지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이 중 외부감사내용(재무제표)과 업무 실적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회계기준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21년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의무화하는 IFRS(국제회계기준)17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많은 보험회사들이 회계기준 변화

에 대비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⁵⁶⁾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복잡한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데 반해 공제의 경우 관련 개별법들이 『상법』의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계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보험회사와 같이 회계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각 공제조합들이 실제로 어떤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그림 II-2〉 보험회사의 공시 내용



자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

보험회사는 다양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림 II-2〉는 보험회사의 공시 의무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재무 현황(재무제표, 지급여력비율), 보험영업관련 사항, 민원 및 소송 건수(〈표 II-15〉 참조), 기타 사항(금융감독원 제재내역 및 금융사고 현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5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0. 29), “IFRS4 2단계 보험사별 준비상황 점검”

〈표 II-15〉 보험회사의 민원 현황 공시 예

(단위: 건, %)

구분		민원 건수			환산 건수		
					(보유계약 10만 건당)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A	자체민원	176	187	6.25	1.59	1.6	0.74
	대외민원	651	662	1.69	5.88	5.67	-3.58
	합계	827	849	2.66	7.47	7.27	-2.66
B	자체민원	253	273	7.91	3.57	3.82	7.11
	대외민원	464	512	10.34	6.55	7.17	9.53
	합계	717	785	9.48	10.11	10.99	8.67

주: 6개 손해보험회사의 민원 관련 공시 내용임. 보험회사 전체가 민원 관련 통계를 공시함
 자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

〈그림 II-3〉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ORSA제도		지급여력제도(RBC) ²⁾	
리스크 통제		이사회, 경영진의 책임	
리스크 평가	측정모형	보험회사 자체모형	RBC 표준모형
	중요 리스크	계량 및 비계량(법률·평판 등)을 포괄하여 회사가 자체 선정	계량리스크 중심
지급여력 평가 (자본적정성)		$\frac{\text{지급여력금액}}{\text{필요자본}^{1)}}$	$\frac{\text{지급여력금액}}{\text{RBC 요구자본}^{1)}}$
평가결과 보고		회사 이사회 보고(승인)	감독당국 보고

주: 1) RBC는 법규에 근거, ORSA는 경험치 등을 활용한 자체 모형으로 리스크 산출,

2) RBC는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전면 개정 시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대체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12. 12),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와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123조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RBC(Risk-Based Capital)라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도입(2009년 시범운영, 2011년 시행)·운영하고 있다. RBC는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리스크⁵⁷⁾ 수준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사업상의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충분한 규

57)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으로 구분함

모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강제하는 재무건전성 규제이다. 이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기업회계에 따른 재무제표와 경영현황 분석을 통해 금융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재무건전성 제도를 확대하여 2017년 자체 리스크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를 도입하였고,⁵⁸⁾ 현재 RBC를 개선한 신지급여력제도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II-3〉 참조).

RBC, ORSA, K-ICS와 같은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 보험회사는 비용을 들여 자본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대부분 공제들은 개별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간단한 보험계리 방법에 따라 준비금을 적립하면 된다. 이러한 공제의 운영 방법은 RBC 제도 도입 이전에 보험회사가 사용하던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평가에 활용되는 RBC나 ORSA에 비해 상당히 단순한 기법이다. 일부 공제조합⁵⁹⁾들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와 유사한 방법의 재무건전성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공제조합들은 매우 단순한 재무건전성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제보험과 보험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서도 차이를 가진다. 〈표 II-13〉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현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제26조)는 3년이다. 이는 2015년 상법 개정(제662조(소멸시효))으로 보험금의 청구권이 3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이다.⁶⁰⁾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 이후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은 이와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반해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제조합의 책임 연한을 2년(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5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12. 12),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와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9) 예를 들어 건설공제조합이 있음

60)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참조)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에 비해 긴 보험금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금액 뿐 아니라 청구 건수가 늘어나 관리 비용(손해사정, 구상 및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모집조직과 민원 관리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표 II-16>는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모집인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표 II-16>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보험모집인이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표 II-16>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모집인 관련 제도 비교

비교 항목	민영보험사	일반공제조직
1. 모집 담당자	임직원,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임직원
2. 자격 요건	연수, 경력, 교육요건, 시험에 합격(중개사 등)	없음
3. 모집 영역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	영역제한 없음
4. 보수교육	있음	없음
5. 행위 규제감독의 내용	약관의 설명의무, 중복계약 확인	약관의 설명의무
6. 통신판매 규제내용	모집, 청약철회 가능, 계약 해지제도 존재	없음

자료: 전우현·제철웅(2018), p. 20

전 절의 약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금을 포함하는 보험상품(저축성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예금보험 보험료는 사업비를 통해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부과된다. 이에 반해 공제조합의 경우 저축성보험에 대해 예금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이 부분이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위의 제도 이외에도 보험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공정거래법, 각종 금융행정지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들은 상당히 복잡한 규제하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을 비롯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많은 규제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고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조합은 보험회사에 비해 부담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이러한 부분이 보험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이번 장은 공제 관련 현황을 공제사업자, 제도, 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장의 내용은 <표 II-17>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II-17> 공제 관련 현황 요약

구분	내용
사업자	• 개수: 98개(일반공제 제외) • 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증, 배상, 화재, 재물, 상해, 퇴직연금, 생명 등 • 재무현황(20개 공제): 자산(79조 6,972억 원), 부채(25조 7,027억 원), 수입(6조 2,708억 원), 지출(3조 9,373억 원)
제도	• 관련 제도: 개별법(38개), 협동조합기본법 • 관리 기관: 17개 부처 • 개별법에 근거한 공제조합: 78개(지역 조합 제외 시 50개) • 개별법의 주요 내용: 설립 방법,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정관, 공제조합의 운영, 공제보험 사업의 운영, 회계, 분쟁조정 등 • 해외제도: 통상 보험과 동일한 기준 또는 보험업법을 기준으로 예외조항을 두어 감독
상품	• 약관: 생명, 자동차, 배상책임 등의 약관은 보험회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보증의 경우 계약 및 보상 관련 내용이 보험회사에 비해 적음 • 요율(비용): 공제의 경우 규제차익으로 인해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보험회사에 비해 적음

주: 약관은 일부 공제의 약관을 비교하였음

현재 78개 공제조합(지역 조합을 계산하지 않을 시 50개)의 유사보험사업이 17개 부처 소관의 38개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개별법들은 공제조

합의 설립 방법,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정관, 공제조합의 운영, 공제보험 사업의 운영, 회계, 분쟁조정 등 공제조합의 유사보험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공제보험과 보험회사의 상품을 약관 및 요율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공제보험의 약관 중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의 약관은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증공제 약관의 경우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보험회사의 약관에 비해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공제조합과 보험회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두 기관의 요율을 정확히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우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공제조합에 비하여 비용을 더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본고는 활용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현재 유사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공제조합 관련 개별법과 관리 주체(정부 기관), 공제조합의 재무 현황, 상품, 관련 제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급적이면 모든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다만 시간상의 제약과 공제 관련 정보의 한계성으로 더 폭 넓고 깊이 있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별도의 장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가 향후 우리나라의 공제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보고서를 마친다.

참고문헌

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금융감독원·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2013), 「우체국보험
및 공제 관련 규제 개선 방안」

김병덕(2013), 「국내 공제회의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금주의 논란』, 22(47), 한
국금융연구원

김경환·박정희(2014),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성」, 『KIRI Weekly』

성대규·김경환(2015), 「공제 감독 현황 및 향후과제」, 『월간손해보험』, 제555호, pp. 26~37

성대규(2014), 「공제에 대한 감독 필요성과 향후 과제」, 세미나 자료, 보험연구원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정책보고서, 보험
연구원

이석호(2008), 「국내 유사보험과 관련된 핵심쟁점 및 개선방안」, 『금주의 논란』,
17(21), 한국금융연구원

이재복(2008), 「국내 유사보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손해보험』, 증권 제 475호, 손해
보험협회

이준복(2011), 「합리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법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17(1),
pp. 81~106

전우현·제철웅(2018), 『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 비교사법학회

한기정(2019), 『보험업법』, 박영사

IAIS-MicroInsurance Network Joint Working Group(2010), "Issue Paper on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Mutuels, Cooperatives and other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n increasing access to Insurance
Markets"

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https://www.kodt.or.kr/guide/guide_02.jsp)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MG새마을금고 홈페이지(<https://insu.kfcc.co.kr/>)

〈부록 표 1〉 공제, 공제 형태, 근거 규정 및 근거 규정 시행일

공제운영기관	구분	근거규정	시행
경찰공제회	상호부조형	경찰공제회법	1991
교정공제회	상호부조형	교정공제회법	2015
군인공제회	상호부조형	군인공제회법	1984
기독교대한성결교회교역자공제회	상호부조형	민법 제32조	1975
나라사랑공제회	상호부조형	민법 제32조	2012
담배인삼공제회	상호부조형	민법 제32조	1972
대한소방공제회	상호부조형	대한소방공제회법	1991
민주화운동공제회	상호부조형	민법 제32조	2005
세우회	상호부조형	민법 제32조	1966
한국관세사회	상호부조형	민법 제32조	1982(상조)
행정공제회	상호부조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1952
농업협동조합	일반공제	농업협동조합법	1969
새마을금고	일반공제	새마을금고법	1963
수산업협동조합	일반공제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신용협동조합	일반공제	신용협동조합법	1960
건설근로자공제회	정책성공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997
과학기술인공제회	정책성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2003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성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84(공제)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조합형공제	민법 제32조	2018
강원도학도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89
강원도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공제운영기관	구분	근거규정	시행
건설공제조합	조합형공제	건설산업기본법	1963
건설기술융역공제조합	조합형공제	건설기술진흥법	2014
건축사공제조합	조합형공제	건축사법	2008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88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91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95
경상북도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91
경상북도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8
광주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91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조합형공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 시설안전관리법	1948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조합형공제	건설산업기본법	1996
대구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90
대구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대전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8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981
부산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88
상조보증공제조합	조합형공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10
서울특별시미세버스운송사업조합	조합형공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1

공제운영기관	구분	근거규정	시행
서울특별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	조합형공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949
서울특별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조합형공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970
서울특별시화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87
서울특별시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2
소방산업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9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998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영유아보육법	2009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1989
울산광역시화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화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92
인천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0
인천학원평생교육시설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0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조합형공제	민법 제32조	2015
기본재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산업발전법	1986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조합형공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2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992
전국건설자원공제조합	조합형공제	건설배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999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조합형공제	직업안정법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2
전국버스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981

공제운영기관	구분	근거규정	시행
전국농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조합형공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2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997
전국택시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979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조합형공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81
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983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90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전라북도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형공제	건설산업기본법	1988
정보통신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정보통신공사업법	1988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직접판매공제조합	조합형공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02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충청남도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태권도공제조합	조합형공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18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조합형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조합형공제	건설배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999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조합형공제	골재채취법	2003(공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합형공제	공인중개사법	1986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조합형공제	민법 제32조	2012

공제운영기관	구분	근거규정	시행
한국교직원공제회	조합형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971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조합형공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2
한국상조공제조합	조합형공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0
한국선수상호보험	조합형공제	선수상호보험조합법	2000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가족공제회	조합형공제	식품위생법	2013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조합형공제	폐기물관리법	2000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합형공제	자동차관리법	2006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조합형공제	폐기물관리법	2014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조합형공제	폐기물관리법	2000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자원순환기본법	2015
한국전지재활용사업협회	조합형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3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조합형공제	산업발전법	1968(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형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1964
한국콘크리트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콘크리트산업진흥법	201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조합형공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01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조합형공제	폐기물관리법	1999
한국포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합형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3
한국해운조합	조합형공제	한국해운조합법	1958(공제)
한국화물운송사업협동조합	조합형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4

〈부록 표 2〉 공제, 보험사업 및 상품

공제운영기관	생명, 손해, 제3보험	상품	상세
경찰공제회	퇴직연금	퇴직/사망/순직/휴면 급여, 상호부조	퇴직, 부조
교정공제회	퇴직연금	퇴직급여	퇴직급여
군인공제회	퇴직연금	퇴직/분할 급여, 저축	퇴직, 부조
기독교대한성결교회교역자공제회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나라사랑공제회	퇴직연금	퇴직급여, 저축, 대여	퇴직급여, 목돈예탁급여
담배인삼공제회	퇴직연금	퇴직금부금, 퇴직연금	퇴직금부금
대한소방공제회	퇴직연금	퇴직급여, 대여, 상호부조	퇴직급여
민주화운동공제회	퇴직연금	생활안정/사망/탈퇴/해약 급여, 대여, 상호부조	생활안정급여, 사망급여, 탈퇴 해약 급여
세우회	상호부조	상조, 상호부조	상조금 수납 및 퇴직부조금 지급
한국관세사회	없음	공제사업 중지	공제사업 중지
행정공제회	퇴직연금	퇴직/복지 급여, 대여	퇴직급여
농업협동조합	없음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공제 사업 분리	생명공제, 손해공제 등
새마을금고	생명, 손해, 제3	예금, 대출, 카드, 공제(제3보험, 손해, 생명), MG손해보험으로 일부 공제사업 분리	생명공제(종신, 암, 어린이, 연금, 저축), 손해공제(건강, 화재, 운전자, 여행, 배상)
수산업협동조합	생명, 손해, 제3	금융, 공제(생명, 손해, 제3보험), 정책성보험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생명공제, 손해공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무배당 어업인안전보험
신용협동조합	없음	예금, 대출	일반공제, 예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연금	퇴직급여	퇴직공제

공제운영기관	생명, 손해, 제3보험	상품	상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형급여, 대여	적립형급여, 퇴직연금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연금	대출, 퇴직연금, 손해(화재, 보증, 배상(PL)) 단 체보험	대출, 퇴직, 보증, 손해, 배상(PL)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없음	목돈마련 지원	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강원도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손해보험(배상책임, 재물, 화재)
건설공제조합	손해, 제3	용자, 신용평가, 손해(보증, 화재, 재물, 배상책임, BI, 근로자재해), 제3(상해)	근로자재해, 건설공사, 조립, 영업배상책임, 완성공사물, 해외근로자재해, 신변안전, 단체상해, 임직원책임종합, 화재종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손해, 제3	손해(보증, 배상책임), 제3(상해)	이행보증, 지급보증, 해외사업보증, 손해배상공제, 재해·상해공제
건축시공제조합	손해	용자, 손해(보증, 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 이행보증, 지급보증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학원안전공제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학원안전공제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경상북도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학원안전공제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손해	손해(재물, 화재, 자연재해, 자연재해 사망)	교육시설공제, 연구활동종사자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근로자재해, 배상책임)	근로자재해, 영업배상책임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공제운영기관	생명, 손해, 제3보험	상품	상세
대구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학원안전공제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대전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수강생안전배상책임,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손해	손해(배상책임, 화재), 상호부조	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상조보증공제조합	손해	손해(보증), 상호사업 보증	보증공제
서울특별시마일버스운송사업조합	내용없음	자세한 내용 없음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내용없음	자세한 내용 없음	자세한 내용 없음
서울특별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내용없음	자세한 내용 없음	홈페이지에 내용 없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사고보상, 배상책임, 여행자보험)	배상책임, 손해(여행자보험)
서울특별시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신꿈나무공제(학원, 독서실 등)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	제3, 상호부조	제3(요양, 장해, 간병), 보상(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배상책임
소방산업공제조합	손해	용자, 손해(보증, 근로자재해, 배상책임, 건설공사)	근로자재해,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설계감리배상책임, 건설공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손해, 상호부조	대여, 손해(보증), 복지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기타 보증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손해, 제3	손해(보상보험, 배상책임, 보증), 제3(상해)	영유아생명신체담보, 화재, 놀이시설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보육교직원상해, 보증공제

공제운영기관	생명, 손해, 제3보험	상품	상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손해, 제3	손해(보증, 배상책임, 근로자재해), 제3(상해)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금보증, 하자보증, 토지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조금반환지급보증, 인허가보증, 산업기반시설지급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물품대금지급보증, 매출채권담보대출보증, 수출보증,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울산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학원안전공제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인천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학원안전공제
인천학원평생교육시설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학원안전공제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보험사업 없음	교육사업, 임자리서비스, 소액대출, 공동구매, 권익증진, 문화나눔	-
자본재공제조합	손해	손해(보증, PL)	생산물배상책임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손해	손해(적재물배상보험)	적재물배상보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손해	손해(자동차)	대인공제, 대물공제, 자손공제, 차량공제, 무보험차상해공제, 긴급출동서비스공제
전국건설자원공제조합	손해	용자, 손해(보증)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금지급보증, 납품보증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손해	손해(직업소개사업자 배상책임)	배상책임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손해	손해(자동차, 배상책임, 일일차차)	사고차량운반조합원배상책임, 일일자기차량

공제운영기관	생명, 손해, 제3보험	상품	상세
전국버스공제조합	손해	손해(자동차)	대인공제, 대물공제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보험사업 없음	공제사업은 하지 않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없음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손해	손해(자동차)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전국택시공제조합	손해	손해(자동차)	대인공제, 대물공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손해	손해(자동차)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종사자재해
전기공사공제조합	손해, 제3	대출, 신용평가, 손해(근로자재해, 배상책임, 공사손해, 보증, 제3(단체상해))	공사보증, 근로자재해, 영업배상책임, 단체상해, 공사손해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
전라북도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상해보험, 화재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손해	용자, 신용평가, 손해(보증, 배상책임, 근로자재해)	근로자재해, 영업배상, 해외근로자, 건설기계
정보통신공제조합	손해, 제3	용자, 손해(보증, 근로자재해, 배상책임), 제3(상해), 퇴직급여(노란우산), 자동차구매자금대출(NH농협)	일반보증, 지급보증, 기타보증, 담보보증, 근로자재해, 영업배상책임, 상해, 노란우산, 신원보증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직접판매공제조합	손해	손해(소비자피해보상보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충청남도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학원안전공제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재물, 화재)	학원안전공제

공제운영기관	생명, 손해, 제3보험	상품	상세
태권도공제조합	손해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손해	용자, 손해(보증)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선급금 지급보증, 납품보증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손해	용자, 신용평가, 손해(보증)	일반보증, 지급보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중개업무공제, 매수신청대리공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손해	손해(배상책임, 여행자보험)	여행자공제, 스키캠프공제, 평생교육책임, 가스배상책임, 대학교현장실습, 외국인유학생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 제3	지축, 대여, 제3(상해, 질병), 생명(건강, 사망, 장해, 입원, 수술, 진단, 치료, 암)	종신/정기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어린이보험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보험사업 없음	보험사업 없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손해, 제3	손해(재물, 배상책임, 여행자, 화재), 제3(상해)	단체상해공제,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 복지시설 화재, 재산종합, 전문직업배상책임, 요양시설배상, 여행배상, 신원보장
한국상조공제조합	손해	손해(공제사업 보증)	보증공제
한국선주상호보험	손해	손해(재물, 배상책임)	P&I보험(배상책임)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기증공제회	손해	손해(재물, 배상책임, 화재)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보험사업 없음	보험사업 없음	-
한국자동차매사업조합연합회	보험사업 없음	보험사업 없음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손해	손해(보증), 상조사업 보증	이행보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손해	손해(보증)	보증공제

공제운영기관	생명, 손해, 제3보험	상품	상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보험사업 없음	보험사업 없음	-
한국전자제품재활용사업협회	보험사업 없음	보험사업 없음	-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보험사업 없음	보험사업 없음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손해	손해(보증)	이행보증(조합 보증공제 및 중소기업중앙회 위탁 사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	손해(재물, 손해배상, 건설공사), 제3(상해)	건물·시설물재해복구, 지방관공선, 손해배상, 단체상해, 시민안전, 건설공사손해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손해	용자, 손해(보증)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이행지급보증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손해	손해(소비자피해보상보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손해	손해(보증)	이행보증
한국포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보험사업 없음	보험사업 없음	-
한국해운조합	손해	손해(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 화물, 기타), 선원원공제, 선박공제, 선박건조공제)	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 화물, 기타), 선원공제, 선박공제, 선박건조공제
한국화물운송사업협동조합	보험사업 없음	보험사업 없음(2014년 설립)	정관에는 중앙회로부터 수탁받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없음

〈부록 표 3〉 공제, 주무부처, 보험업법 적용 여부, 금융감독자 협의 여부, 금융감독자 감독 참여 여부 등

공제운영기관	주무부처	업법	협의	감독
경찰공제회	경찰청	-	-	-
교정공제회	법무부	-	-	-
군인공제회	국방부	-	-	-
기독교대한성결교회교역자공제회	문화체육관광부	-	-	-
나라사랑공제회	-	-	-	-
담배인삼공제회	농림축산식품부	-	-	-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청	-	-	-
민주회운동공제회	-	-	-	-
세우회	-	-	-	-
한국관세사회	기획재정부	-	-	-
행정공제회	행정안전부	-	-	-
농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	○	○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	○	-
수산업협동조합	해양수산부	○	○	○
신용협동조합	금융위원회	○	○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	-	-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	○	-
강원도일자리경제조합	강원도청	-	-	-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강원도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공제운영기관	주무부처	업비	협의	감독
건설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건설기술평역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건축사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경상북도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부	-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대구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대전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보건복지부	-	-	-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	-	○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국토교통부	○	-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국토교통부	○	-	-
서울특별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국토교통부	○	-	-

공제운영기관	주무부처	업비	협의	감독
서울특별시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서울특별시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청	-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건복지부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통상자원부	-	-	-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울산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인천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인천학원평생교육시설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	-	-	-
자본재공제조합	산업통상자원부	-	-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국토교통부	○	-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전국건설자원공제조합	환경부	○	-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고용노동부	-	-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전국버스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국토교통부	○	-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공제운영기관	주무부처	업비	협의	감독
전국택시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전기공사공제조합	산업통상자원부	-	-	-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전라북도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전문건설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정보통신공제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	-	-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충청남도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교육부	-	-	-
태권도공제조합	문화체육관광부	-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부	-	-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환경부	○	-	-
한국골프협회공제조합	국토교통부	-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	-	○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교육부	-	-	-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부	-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공제조합	환경부	-	-	-

공제운영기관	주무부처	업변	협의	감독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건복지부	○	-	-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	-	○
한국선주상호보험	해양수산부	-	○	○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기죽공제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환경부	-	-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국토교통부	-	-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환경부	-	-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환경부	-	-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환경부	-	-	-
한국전지재활용사업협회	환경부	-	-	-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부	-	-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안전부	-	-	-
한국콘텐츠공제조합	문화체육관광부	-	-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	-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환경부	-	-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부	-	-	-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	-	-	-
한국화물운송사업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	○	○	-

〈부록 표 4〉 공제 개별법의 설립, 사업, 정관

개별법	공제 설립, 인가	공제 사업	정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9조 ④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 정관을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건설기술진흥법	제74조	제75조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④ 정관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0조(협회의 설립)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
건축사법	제38조의3, 4	제38조의5	제35조(위임 규정) ①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
경철공제회법	제1조(목적)	제16조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골재채취법	제40조, 영 제38조의2	-	시행령 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영 제33조, 제34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제16조, 제16조의2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교정공제회법	-	제15조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군인공제회법	-	제14조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대한소방공제회법	-	제17조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제16조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영 제45조(인가)	제40조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⑥ 정관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
산업발전법	제40조	제41조	제40조(공제조합) ③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조(목적), 제14조(설립 신청), 제15조(설립 인가)	제3조	제11조(정관 기재사항)

개별법	공제 설립, 인가	공제 사업	정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령 제32조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③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설립)	제28조,령 제21조	제2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③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제60조의2	제60조의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보험가입만 의무화, 다른 내용 없음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산업통상자원부 인가), 제34조	제34조,령 제50조(공제 서비스 종류)	제36조(법인격 등) ②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국토교통부 인가),령 제23조(공제사업 허가, 국토교통부),령 제24조	제64조	제54조(정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보건복지부 허가),령2 제21조의5	-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⑦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보건복지부 인가)	-	제7조(정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	-
자립순환기본법	제18조(사업자단체 설립에 대한 내용만 있음)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부 인가)	제28조의2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④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

개별법	공제 설립, 인가	공제 사업	정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조	제9조, 제9조의2(공제규정을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 변경 시에도 보고)	제7조(정관의 내용)
정보통신공사법	제4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령 제4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제46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절(설립)	제3절(사업)	제35조의2(공제규정 증소벤처기업부 인가, 변경 시도 마찬가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직업소개소의 손해배상책임),령 제37조의2(고용노동부 인가)	제34조의2(공제에 대한 제반 내용),령 제37조의3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문화체육관광부 인가),령 제18조의2(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제20조의3,령 제18조의6	제20조의5(공제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승인),령 제18조의8(공제 규정 세부 내용 정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배상책임, 공제, 보험에 대한 내용 없음	-	-
폐기물관리법	제41조	제42조	-

개별법	공제 설립, 인가	공제 사업	정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방)	제11조(교육감,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사업 실시), 제15조(설립)	제18조,령 제10조의5	제17조(정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중앙회)	제28조(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립)	제29조,령 제10조의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의 책무에 포함/공제 의무 포함)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설립목적)	제11조	제4조(정관) 내용,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교육부 인가로 변경 가능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제16조	제5조(정관) 내용, 정관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인가를 받아 변경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해양수산부의 설립인가로 조합 설립), 제6조의2(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10조(정관 기재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명의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령 제18조(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제29조	제30조(정관), 내용, 정관을 변경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령 제20조(정관상 기재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운수사업자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 가능), 제51조(공제조합 설립 방법, 국토교통부 인가)	제51조의6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⑦ 정관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 제51조의3(정관을 국토교통부에 인가받아야 함)
농업협동조합법	(원전히 분리)	-	-

개별법	공제 설립, 인가	공제 사업	정관
새마을금고법	MG손해보험설립(국제손해보험 (주) 인수), 제7조(중앙회장이 정하 는 정관제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 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령 제34조(행정안전부장관 은 중앙회의 공제규정을 인가하 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제28조(금고가 회원 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68조(공제사업 시 공제규정으로 주 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아야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 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령 제 13조(금고가 회원을 위한 공제사 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공제 규정 변경·폐지 시에도 인가를 받아야 함).	제60조(공제사업이 가능한 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제17조(정관의 기재사항), 제60조의2(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려 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공 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과 관련해 정관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7조제1항에 따 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및 신용사업특별회계 출자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 여야 함)
수협은행	제141조의4(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 로 분.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 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제141조의9(수협은 행은 수산업과 관련 한 업무와 일반 은 행업무를 수행함)	제141조의5(정관의 기재사항)
신용협동조합법(조합)	제7조(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 결의를 중앙회 회장을 거쳐 금	제39조(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수행)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개별법	공제 설립, 인가	공제 사업	정관
	공위원의 인가를 받아 설립, 제6조(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음.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봄)		
신용협동조합법(중앙회)	제61조(별도로 중앙회의 설립을 정함), 제97조(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제78조(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수행), 제97조(공제사업 제반 내용)	제64조(정관 기재 내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함)	-	-

〈부록 표 5〉 공제 개별법의 재산의 조성과 보험업법 적용 배제 여부

개별법	재산의 조성	보험업법 적용 배제 여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
건설기술진흥법	-	-
건설산업기본법	-	제58조(배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0조(배제)
건축사법	-	-
경찰공제회법	-	-
골재채취법	-	제40조(금융위원회 협의)
공인중개사법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
교정공제회법	-	-
군인공제회법	-	-
대한소방공제회법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산업발전법	-	-
신주상호보험조합법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
식품위생법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개별법	재산의 조성	보험업법 적용 배제 여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영유아보육법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자동차관리법	-	-
자원순환기본법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직업안정법	-	-
컨테이너산업진흥법	령 제18조의7(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연 또는 위탁, 공제사업 차임금, 수익금)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
폐기물관리법	제43조(조합원 부담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방)	제24조(학교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및 이외 수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중앙회)	제32조(공제회 부담금 및 수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2조(회원 부담금 및 정부보조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회원의 회비, 출연금 및 기타 수입,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 가능)	-

개별법	재산의 조성	보험업법 적용 배제 여부
한국해운조합법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농업협동조합법	-	-
새마을금고법	제9조(회원 출자)	제68조(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 복계약 체결의 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 법』 제95조의5를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조합원 출자)	-
수협은행	제153조(국가나 공공단체는 수협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와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조합)	제13조(조합원의 출자금)	-
신용협동조합법(중앙회)	제63조(조합의 납입출자금으로 자본금 조성), 제 92조(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 급할 수 있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

〈부록 표 6〉 공제 개별법의 조직 및 임원의 선출관련 조항

개별법	조직		임원의 선출/선임
	대의원회,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	-
건설기술진흥법	-	-	-
건설산업기본법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건축사법	-	-	-
경찰공제회법	-	-	-
골재채취법	-	-	-
공인중개사법	-	령 제35조의2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제10조, 제11조	-
교정공제회법	-	제10조	-
군인공제회법	제8조(회원 중 정관으로 정함)	제10조(국방부장관 지명/위촉 3인, 대의원회의 선출 3인)	제12조(이사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 승인,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국방부장관 승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0조(회원 중 정관으로 정함), 제11조(이사장·감사 선출)	제12조(대의원과 6인 선출)	제14조(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의 선출 후 소방청장 승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9조(정관에 따라 선출), 제10조(이사장·이사·감사 선출)	제11조(이사장·대의원회 선출 6인으로 구성)	제13조(이사장·이사는 대의원회의 선출 후 행정부장관이 승인, 감사는 대의원회의 선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령 제47조의3(이사장 이사회 소집 가능)	령 제47조의2(이사·감사·이사장을 정관에 따라 선임)

개별법	조직		임원의 선출/선임
	대의원회,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정관의 변경, 이사장·이사·감사 선출)	-	-
산업발전법	-	-	-
선주상호보호조합법	제33조(총회, 총회 의장이 대표이사가 됨)		제37조(임원 이사·감사·상임이사), 제38조(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
식품위생법	제61조(500인 이상의 경우 대의원회 가능)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6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업무), 령 제27조(운영위원회 상제,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
영유아보육법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
자동차관리법	-	-	-
자원순환기본법	-	-	-

개별법	조치		임원의 선출/선임
	대의원회,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7조	-	령 제10조의6(조합원12, 변호사·공인 회계사 1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추천하는 자 1인, 한국전기공사협회 1인 등)
정보통신공사사업법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	-	제123조(회장은 총회 투표, 부회장은 중소기업창업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
직업안정법	-	-	-
콘텐츠산업진흥법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	-
폐기물관리법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방)	-	제22조(이사회는 주요 사항 의결)	제19조(이사장·이사·감사 등), 제20조(이사장을 교육감이 임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중앙회)	-	-	제30조(이사장 및 19인 이내의 이사, 2인 이내의 감사, 비상임), 제3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 추천인 중 교육부 임명), 령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는 기준에 따라 교육부가 위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개별법	조직		임원의 선출/선임
	대의원회,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조(정관에 따라 대의원 선출), 제9조(최고결의기관인 대의원회,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업·결산보고 및 기타 업무)	-	제15조(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음, 이사는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함, 감사는 운영위원회 선출하고 교육부 승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8조(의결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집행기관인 이사장, 감사기관인 감사), 제9조(총회는 공제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사, 20명 이내의 회원)	제12조(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후 행정안전부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해운조합법	제16조(의결기관인 총회, 대의원 조합원이 직접 선출)	-	제22조(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장 1인, 상무이사 3인 이내, 이사 9인 이내, 감사 2인, 회장, 부회장, 이사장, 감사 총회 선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1조의4(공제조합 운영위원회),령 제11조의4(공제조합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총회가 조합원 중 선임하는 사람, 해당 연합회의 회장, 공제사업회 이사장 등이 운영위원이 됨.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포함)	-
농업협동조합법	-	-	-

개별법	조직		임원의 선출/선임
	대의원회,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제16조(회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을 둘 수 있음)	제60조(중앙회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 회장·부회장·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이사·전문이사 등의 이사로 구성), 제64조(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신용공제대표 1명, 지도이사 1명, 전문이사 1명 등 11~21명 및 5인의 감사위원 등으로 구성),령 제30조의3(별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중앙회 이사가 아닌 금고 이사장 2명, 중앙회 이사인 금고 이사장 2명, 외부전문가(공무원 제외)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1명, 외부전문가 2명(공무원 제외),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제18조(회장은 정관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제64조의2(회장은 회원 중 선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6조(총회가 주요 사항 의결), 제44조(대의원회)	제45조(이사회가 주요 업무 관련 사항 의결), 제46조(조합장을 포함한 7~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 감사 중 1명은 령에 부합하는 외부전문가 중 선출), 제127조(중앙회 이사회: 중앙회 업무관련 주요 사항 의결.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됨. ② 이사회는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	제127조의2(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외부전문가(공무원 제외)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외부전문가 중 이사 후보자 등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2명 등을 추천함), 제134조(중앙회 임원은 정관에 따라 선출)

개별법	조직		임원의 선출/선임
	대의원회,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수협은행		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어야 함), 제129조(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둠)	
	-	제141조의7(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이사 및 감사를 둠), 제141조의8(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	제141조의7(수협은행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됨), 제144조(조합 감사위원회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음)
	제23조(조합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 운영)	제27조(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2명 또는 3명으로 임원 구성), 제30조(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음) ②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任免)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27조(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함), 제30조(간부직원의 기준과 임면은 중앙회장이 정함)

신용협동조합법(조합)

수협은행

개별법	조직		임원의 선출/선임
	대의원회,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신용협동조합법(중앙회)	제68조(총회), 제70조(대의원회)	제71조(회장 1명,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감사·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 제74조(이사회)	제71조의2(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감사·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전문이사 2명 및 회원 이사장 2명, 외부전문가(공무원 제외)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등)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	-

〈부록 표 7〉 공제 개별법의 공시 및 예·결산 관련 조항

개별법	공시	예산·결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의5
건설기술진흥법	-	-
건설산업기본법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건축사법	-	-
경찰공제회법	-	-
골재채취법	-	-
공인중개사법	법 제35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제19조
교정공제회법	-	제18조
군인공제회법	-	제17조
대한소방공제회법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산업발전법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식품위생법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

개별법	공시	예산·결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영유아보육법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자동차관리법	-	-
자원순환기본법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직업안정법	-	-
콘텐츠산업진흥법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
폐기물관리법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방)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중앙회)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
한국해운조합법	-	-

개별법	공시	예산·결산
합부거래에 관한 법률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농업협동조합법	-	-
새마을금고법	제34조(주요 사무소에 재무제표 구비)	제33조(총회 의결)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7조(지구별 수협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 제73조(조합장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수협은행	-	제162조(총회가 예산 의결), 제163조(중앙회가 결산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신용협동조합법(조합)	-	제47조(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운영. 결산 보고서 총회 승인 후 중앙회장에게 제출. 규모가 큰 조합(자산 300억 원 이상)의 경우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제48조(사업 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함)
신용협동조합법(중앙회)	-	제81조(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총회에서 결의 받음, 결산보고서를 총회에서 승인 받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

〈부록 표 8〉 공제 개별법의 준비금 및 공시의무 관련 조항

개별법	준비금	공시의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	-
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건축사법	-	-
경찰공제회법	제19조	-
클래채취법	법 제38조의2	-
공인중개사법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0조	제21조의2(공시)
교정공제회법	제19조	-
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2	제17조의4(감사원/국방부/외부전문가 감사)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1조	제22조의2(감사원/소방청/외부 전문가 감사 및 공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0조	제21조의2(내부/외부 회계감사 후 공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	-
산업발전법	제46조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 법 제35조(손실보전준비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1조(손실보전준비금), 법 제24조(손실보전준비금)	-
식품위생법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

개별법	준비금	공사의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보험가입 의무화 내용만 있음)
영유아보육법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자동차관리법	-	-
자원순환기본법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시행령 제13조의3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직업안정법	-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 적립),령 제18조의9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
폐기물관리법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방)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중앙회)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3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0조	-
한국해운조합법	-	-

개별법	준비금	공시의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농업협동조합법	-	-
새마을금고법	제34조(적립금의 적립)	제75조(령에 따른 공시의무가 있음), 제76조(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②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및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그 밖에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함)	-
수협은행	제165조(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음), 제166조(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 및 각 사업 부문별로 실시함. 중앙회는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함)	-
신용협동조합법(조합)	제43조(상환준비금을 예치해야 함), 제49조~52조(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특별치리금, 손실금 등)	-
신용협동조합법(중앙회)	-	제83조의2(공시 의무가 있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짐)	-

〈부록 표 9〉 공제 개별법의 감독 및 시정명령 관련 권한

개별법	지도·감독·검사·조사	시정명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용노동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76조, 제77조(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운영위원회가 감독), 제65조(국토교통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3조(환경부)	-
건축사법	제38조의8(국토교통부)	-
경찰공제회법	제20조의2(감사원, 경찰청)	-
골재채취법	제40조	-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국토부 요청 시 금감원 수행, 국토부)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5(과기부에 실적 제출), 제24조(과기부 행정조치 가능)	-
교정공제회법	-	제21조(법무장관 시정명령)
군인공제회법	-	제17조의5(시정명령)
대한소방공제회법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제21조의2(행안부장관 시정 요청 가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공정위 검사 기능),령 제48조(공정위 감독)	제39조(공정위 시정 명령 가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산업발전법	-	-

개별법	지도·감독·검사·조사	시정명령
선주상호보호조합법	제51조(금융위원회 자료제출 명령권)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령 제29조(소방청장 감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령 제28조(과기부 보고 의무)	-
식품위생법	제60조의4(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출 명령, 검사 가능)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
에너지저장산업진흥법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보고/자료제출 명령, 검사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국토교통부 조사/검사/개선명령 가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영유아보육법	령 제21조의7(보건복지부에 결산서 제출, 보건복지부 보고 명령, 지도, 감독 시정 요구 가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자동차관리법	-	-
자원순환기본법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환경부 시정명령, 임원 해임/인가 취소 가능)	-
전기공사업제조합법	제40조(산업통상자원부 감독, 명령, 조치 요청 가능), 제41조(보고서 제출, 시정 명령 가능, 서류 검사 가능)	-

개별법	지도·감독·검사·조사	시정명령
정보통신공사업법	령 제4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명령 가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중소벤처기업부감독), 제129조(결산서류 제출의무), 제130조(총회 및 주요 변경사항 보고의무, 주무관청이 보고를 받을 권한 존재), 제131조(주무부처 검사 권한 존재), 제133조(행정명령권)	-
직업안정법	-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의2,령 제18조의5(문화체육관광부가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결 사항, 조합원 변동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기구 및 조직 등을 감독, 사업계획 및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료제출 명령권)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
폐기물관리법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방)	제25조(교육감에게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제출, 교육감은 재산 검사권 및 정관 변경 명령권을 가짐)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중앙회)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한국교육진흥원공제회법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9조(예산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결산을 행정안전부에 보고), 제21조의2(주요 내용을 공시, 행정안전부 시정 요구 가능)	-

개별법	지도·감독·검사·조사	시정명령
한국해운조합법	제39조(해양수산부 감독권 및 명령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공정거래위원회가 회계 관련 보고서 제출 명령, 회계 상황 조사 및 서류 검사 기능 시정 명령 가능, 임직원 해임 요구 가능), 령 제19조(공정거래위원회에 예산/결산 보고서 제출, 재무상태표 공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7(국토교통부는 보고서 제출 명령, 회계 상황 조치, 검사 등의 권한을 가짐), 제51조의8(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업무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제51조의10(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 임직원에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행위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제54조(국토교통부는 협회/연합회를 조사/검사/지도/감독할 수 있음), 령 제11조의3(예산/결산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함)	-
농업협동조합법	-	-
새마을금고법	제61조(감사위원회가 감사. 5인으로 구성(3인은 외부 전문가), 감사추천위원회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호선), 제61조(재산 및 업무 집행사항을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 제74조(주무부장관이 금고/중앙회 감독,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 주무부장관이 금고/중앙회에 보고서 제출 명령, 또는 관계자의 출석/의견의 진술 요구 가능, 주무부장관 검사 가능,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 가능), 제79조(회장이 금고를 지도	제74조(주무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 가능), 제74조의2(주무부 장관이 임원에게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가능, 직원에게 징계/면직/징직/감봉/견책/경고/주의가능), 제74조의3(주무부장관이 금고/중앙회가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 또는 주의/시정명령/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가능), 제80조(주무부장관은 금고가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별법	지도·감독·검사·조사	시정명령
	/감독함), 제79조의 2, 3(금고감독위원회를 통해 금고 감독)	지도를 할 수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함. 이 경우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조항이 정하고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음), 제133조(중앙회에 중앙회 감사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둔. 감사위원은 정관에 따라 선출)	-
수협은행	제141조의4(수협은행의 경우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제142조(중앙회의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약·규정 또는 예규 등을 정할 수 있음.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평가 및 회원에게 경영 개선을 요구, 합병을 권고 등을 할 수 있음. 회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을	제142조(중앙회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자회사에 경영개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제169조(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제170조(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 등과 중앙회의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와 소집 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의 정지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할 수 있고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등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개별법	지도·감독·검사·조사	시정명령
	요청할 수 있음), 제142조의2(중앙회는 자회사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를 운영함), 제169조(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중앙회·수협은행 및 조합협회의 업무를 감독,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제172조(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 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음)	할 수 있음), 제173조(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 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음)
신용협동조합법(조합)	제37조(연차·감사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	-
신용협동조합법(중앙회)	제76조(감사위원회를 둔. 감사위원회의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전문이사로 구성함), 제81조(결산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함), 제83조(금융위원회가 감독), 제83조(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권을 가진), 제83조의4(조합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제출), 제89조(중앙회장은 조합을 지도·감독)	제84조(금융위원회가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제85조(금융위원회가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제86조(금융위원회가 경영관리 가능)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함), 제10조(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	-

개별법	지도·감독·검사·조사	시정명령
	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계약보험금한도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러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 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함.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 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함.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	

〈부록 표 10〉 공제 개별법의 재무건전성, 분쟁조정 및 기타 조항

개별법	재무건전성	분쟁조정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	-
건설기술진흥법	-	-	-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건축사법	-	-	-
경찰공제회법	-	-	-
골채취법	-	-	-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령 제35조의3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	-
교정공제회법	-	-	-
군인공제회법	-	-	-
대한소방공제회법	-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
산업발전법	-	-	-
신주상호보험조합법	-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개별법	재무건전성	분쟁조정	기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
식품위생법	-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재무건전성),령 제28조(상세 기준)	제70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
영유아보육법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
자동차관리법	-	-	-
자원순환기본법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전기공사업법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제9조(정부, 지자체의 협력 의무), 제135조(주무관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직업안전법	-	-	-
콘텐츠산업진흥법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	-

개별법	재무건전성	분쟁조정	기타
폐기물관리법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방)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중앙회)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	-
한국해운조합법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	제52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농업협동조합법	-	-	-
세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운영), 제72조와 제72조의2(준비금 운영), 제77조(다양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함)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수산업협동조합법	-	-	-
수협은행	-	-	-
신용협동조합법(조합)	-	-	-
신용협동조합법(중앙회)	제80조(예금자보호기금 설치), 제83조의3(다양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	제92조(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시업에 필요

개별법	재무건전성	분쟁조정	기타
	준수해야 함)		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을 조합과 중앙회 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하여야 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	제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에 관 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부록 표 11〉 약관 비교: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약관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보상하는 손해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이 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1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2. 보증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3. 보증서를 보증 목적(실시협약 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시설사업 준공 후 해당 시설물의 관리(유지 보수 포함)·운영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때 5. 제5조,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해연로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해연로 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2	2
보상 한도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 한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시협약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실시협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제6조(보증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증금은 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 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 손해액으로 합니다.	3	6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한도로 하여 보증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실제 손해액에는 지체상금 약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실 손해액에는 지체상금 약정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지급보증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계약의 성립	-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청약을 받은 후 회사가 담보하는 채무의 내용, 계약자의 자산상태, 이행 능력, 신용도 등을 심사(보험계약심사) 하여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자에게 적절한 담보의 제공과 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증권(보험 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⑤ 이미 성립한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 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보험 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장 개시	-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	-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2조(계약의 해지),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채권자의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	제4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 의무) ① 보증 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 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손해의 방지와 경감 의무) ① 보험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드립니다.	4	4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주계약 해지의무	제5조(주계약의 해지) 보증 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실시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주계약의 해지) ① 피보증자는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증자가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5 19
청약의 철회	-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피보증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증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17
계약의 내용 변경	제6조 (보증서의 효력상실)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피보증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6 18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2.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조사권	제9조(사업이행 상황 및 보증채무의 확인 조사) ①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에 따라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요청할 경우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9	3
담보 처분	-	제9조(담보의 처분)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담보 채공자가 제공한 담보는 별정절차에 따라 처분합니다. 다만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취득이 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기로 한 때에는	-	9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처분하기 10일 전까지 담보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보증사고 의 통지 및 보증 채무의 이행청구	제8조(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 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 시에는 보증금 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또는 그 사본) 및 실시협약서 사본 2. 사업 이행 포기나 실시협약 해제(해지) 등 보증사고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와 그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증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증사고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② 보증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증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보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포함) 3. 보험 증권 또는 그 사본 4.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5.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8	5①, ②
통지의무	제7조(보증 채권자의 통지의무) 보증 채권자는 채무자가 출자 구성원의 지분 양도 등으로 출자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에 관한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보험 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10, 11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1. 청약서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시기	제10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5②
가 지급 보험금	-	제5조 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하여 가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가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가 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1항에서 정한	-	5③, ④, ⑤, ⑥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담함을 다투는 경우 2.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거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⑥ 회사가 제2항의 지급보험금 및 제3항의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위 및 구상권	제11조(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 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1	7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③ 조합은 보증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권리 양도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제12조(양도) 보증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12	12
사기에 의한 계약	-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기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	13
보험사고의 발생	-	제20조(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사고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	20
계약의 무효	-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21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계약의 해지	-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증을 모집한 자(이하 "보증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	-	22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환급	-	제23조(보험료의 환급) ① 회사는 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2.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계약을 해지한 때 3. 계약자가 보험 증권을 발급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보험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 증권과 제1항의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보험 증권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돌려드릴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 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많은 때에는 최저 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④ 제3항의 경과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주계약에서 정한 계약자의 채무가 소멸하여 이 계약을 해지한 때: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	23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가 소멸한 날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 계산 2. 기타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한 때 또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보험료 환급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 계산 ⑤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분쟁조정	-	제2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
관할법원	제13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3	25
소멸시효	-	제2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26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약관의 해석	-	제2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27
보험안내 장의 효력	-	제28조(회사가 제작성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성의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28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	제1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거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	15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변제 등 충당순서	-	제8조(변제 등의 충당 순서) ① 계약자(계약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3자를 포함합니다)가 변제한 금액 또는 회사의 담보권 행사·상계 또는 채권추심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 계약자의 전체 채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용, 지급보험금(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전체 채무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기타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는 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 순서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8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	29

항목	보험회사		조항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건공	서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	제30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신용) 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신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 등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신용)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30
예금자 보호제도	-	제32조(예금자보호제도)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31

〈부록 표 12〉 약관 비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손해보험회사 배상책임보험 약관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목적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이 인간, 주민등록, 여권 등의 각종 민원서류 및 제 증명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1	1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피공제자: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별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공제 등록증권: 공제 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내 시, 군, 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 4. 배상 책임: 공제 등록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공제 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5. 보상한도액: 공제회와 회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제2조(용어의 정의)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별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 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 책임: 보험 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2	2

항목	한국지반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중 제2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공제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일임 받은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라 합니다)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6.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7. 보험금 분담: 업무 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8. 대위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9. 손해배상청구: 피공제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중재, 조정 또는 화해 등의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배상이 아닌 원상 회복, 중지, 유지 또는 이행 등의 명령, 처분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0.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금 및 배상금에 대한 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방어 비용: 피 공제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합니다. 12. 신체 상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13.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나.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보상하는 손해	14. 1회의 손해배상청구: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원인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손해배상청구로 봅니다. 15. 연단위 복리: 보험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출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16.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7. 공제기간: 공제 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18. 영업일: 공제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18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공제 등록증권에 기재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18	3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2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 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통보험료. 그러나 보험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28조(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위 ①항의 “사고”라 함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켰다고 주장되는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③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제 등록증권상에 소급 보장 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 보장 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통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원인 또는 행위로 기인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공제 등록증권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공무원)를 포함합니다)의 고의로 생긴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19	4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2. 신체 장애, 정신적 고통,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 등의 명예훼손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인격침해 4. 피공제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책임으로 인한 손해 6.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 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7. 공제 기간 개시일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 8. 공제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중에서 주장되었던 행위 9.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0.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12.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의 불완전 기동 및 제3자의 침투 행위로 기인된 손해	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터널,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보험금의 지급절차	서류 4. 보험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4. 보험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2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보험사는 제2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3	7
보험금 등 지급한도	제2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사는 1회의 배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 등록증원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8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8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가' 목, '나' 목, 또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 목, '나' 목 또는 '다' 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24	8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의무보험과 의 관계	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8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다. ② 공제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 총액은 공제 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 한도로 합니다. 이때에 제20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항의 규정에서 제외된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배상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 총액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공제 등록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26조(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25	9
보험금의 분담	제26조(보험금의 분담) ① 업무 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	26	10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손해방지의 무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공제 등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공제 등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7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 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다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8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 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27	11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제2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8	12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합의 등 협조 대행	제29조(합의·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액이 공제 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비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합의·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비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9	13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대위권	제30조(대위권) 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 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30	14
	제31조(등록 전 알릴의무)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등록 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31	15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계약 후 알릴 의무	-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2	16
양도	제33조(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동의한 경우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등록 신	제16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	33	16의2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제34조(사기에 의한 등록)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공제등록이 성립되었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4	17
보험계약의 성립	제3조(공제등록) 공제등록은 공제회 회원이 별지 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공제등록신청과 공제회의 공제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18
청약의 철회	-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9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제4조(약관의 제공) ① 공제회는 공제 등록을 신청한 회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회사를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20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의 무효	제5조(등록의 무효)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공제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	5	21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제7조(등록내용의 변경 등) ① 회원은 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을 문서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 등록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회원명, 피공제자 2. 보상한도액, 공제회비 등 기타 공제 등록의 내용 ② 공제회는 회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 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등록 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17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 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 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제 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7	22
조사	제8조(조사) ① 보험사는 공제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	제23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 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8	23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타인을 위한 계약	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제 등 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사는 공제 등록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는 공제기간 중 또는 보험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 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 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 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 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9조(타인을 위한 공제 등록) ① 회원은 타인을 위한 공 제 등록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공제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 유로 공제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공제 등록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이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 상한 때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만드 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 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 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 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24
보장 개시	제6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보장은 공제 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 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 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 등 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공제 등록신청을 받고, 그 신 청을 공제 등록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 긴 때에는 보장을 합니다.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6	25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차가 제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2회 이후 보험료 납입	-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26
보험료 연체 및 해지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	27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	-	제28조(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에금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28
강제집행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	-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	-	29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제15조(등록의 해지) ① 회원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 등록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 배상공제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31조(등록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15	30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32조(등록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등록 후 알릴 제3항의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등록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등록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공제회비 등을 받은 때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⑤ 제3항에 의한 등록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드립니다. ⑥ 보험사는 다른 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등록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 등록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16조(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한 경우 공제회는 그 취지를 등록한 회원에게 통지하고 제17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6	31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2
보험료의 환급	제17조(공제회비의 환급) ① 이 공제 등록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회비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	17	33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1.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회비의 전액,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 2.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 위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뺀 잔액. 다만, 회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쟁 조정	-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4
관할 법원	제36조(관할법원) 본 공제등록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제	36	35

항목	한국지법재정경제원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회비 및 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7	36
약관의 해석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 및 보험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회 및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회원이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38	37
안내장 효력	-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38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	39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공제 등 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공 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 보험사는 공제 등록 및 사고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기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0
준거법	제40조(준거법) 본 공제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설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판례를 따릅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설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판례를 따릅니다.	39	40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42
기록 비치	제35조(기록의 완비)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직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	35	-

항목	한국지법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없이 이 의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고연장 기간 설정 대상	제10조(보고 연장보장 기간의 설정 대상) 공제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제12조(자동 보고 연장보장 기간)에 정한 보고 연장보장 기간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드립니다. 1. 공제회비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제 등록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공제회가 이 공제 등록을 배상 청구기준으로서 이 공제 등록증관상의 소급 보장 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 보장 일자로 하는 등록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공제회가 이 공제 등록을 배상 청구기준이 아닌 공제 등록으로 대체했을 경우	-	10	-
보고연장 보장 기간의 보상특칙	제11조(보고 연장보장 기간의 보상 특칙) 공제회가 보고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18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보고 연장보장 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공제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 보장 일자와 공제기간 만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보고 연장보장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11	-
자동 보고 연장 담보 기간	제12조(자동 보고 연장 담보 기간) ① 자동 보고 연장 담보 기간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 등록 해지일)로부터 2년간. 2.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 등록 해지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 연장 담보 기간은 공제 등록증관상의 소급	-	12	-

항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조항	
			공제	표준
	담보 일자로부터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 등록 해지일) 이후 제1호의 기간 동안에 보험사에 통지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 동보고 연장 담보 기간 중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그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또는 공제 등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 보고 보고 연장 담보 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금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윤아·한성원 2020.1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운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보험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해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 2020-2 보험회사 사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향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 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제 12 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2020-1 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4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저 자 약 력

최 창 희

The University of Iowa 경영과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cchoi@kiri.or.kr)

홍 민 지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mjh@kiri.or.kr)

조사자료집 20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발행일 2020년 4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정가 10,000원